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 일시 : **2018. 6. 22.**(금)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국회의원 진선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지난 11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제수용시설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수많은 아동과 빈민들이 선감도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매일같이 매질을 당하며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선감학원의 시작은 일제에 의한 것이었지만, 광복 이후에도 독재 정부에 의해 이 같은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걸 모습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부랑아로 인식되어 납치되듯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감행했다가 역사하거나 실패 후에는 더욱 가혹한 매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5.16 군사쿠데타 정권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부랑아’로 상정하고 단속한 부랑아 수와 그 감소를 들어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시기 국가가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정치적 성과와 돈벌이를 위한 동원수단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36년이 되어 당시 십대였던 생존피해자들이 5~60대 성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감학원에서의 피해 기억은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여전히 강력합니다. 국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국가는 언제까지나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재확인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의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 진 선 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연구를 잘 수행해주신 연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동기에 당한 학대 등 인권침해는 아동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랫동안 피해를 남깁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며,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선감학원에 수용되어 고통받은 아이들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소년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산 선감도에 설치했는데, 해방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982년 폐쇄되기까지 4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아동들이 수용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부랑아 정책 아래, 단지 복장이 남루하다거나 행동이 불량하다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제노역과 열악한 환경, 폭행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간신히 탈출하거나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30년이 넘는 지금도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인권침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선감학원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당시 아동들의 피해상황, 향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대책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현재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이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 사건임을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피해생존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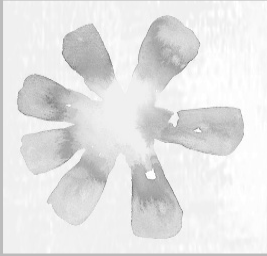
2018년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일 시 : 2018. 6. 22.(금) 1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간	내용	발표자
15:00~15:05(5분)	개회	• 진행 : 윤채완(국가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장)
15:05~15:15(10분)	인사말씀	• 진선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혜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5:15~15:30(15분)	피해생존자 발언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 이대준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15:30~15:45(15분)	발제 1. 선감학원의 역사와 인권침해 실태	• 하금철 (비마이너 신문사 기자)
15:45~16:00(15분)	발제 2.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	• 김갑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위원회)
16:00~16:15(15분)	발제 3. 선감학원 사건의 해결 방안	•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16:15~16:25(10분)	휴식	
16:25~17:05(40분)	토론	• 사회 : 조영선(국가인권위 사무총장) •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 차성이 (수원스마일센터 부센터장) •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7:05~17:30(25분)	종합토론	참석자 모두
17:30	정리	사회자



차 례

CONTENTS

[피해생존자 발언]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_ 3
- 이대준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_ 5

[사례발표]

발제 1. 선감학원의 역사와 인권침해 실태 _ 11

하금철 (비마이너 신문사 기자)

발제 2.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 _ 33

김갑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위원회)

발제 3. 선감학원 사건의 해결 방안 _ 49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지정토론]

-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_ 67
-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_ 71
- 차성이 (수원스마일센터 부센터장) _ 76
-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_ 79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발언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 이대준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발언문

김영배 | 선감학원 아동피해자 대책협의회 회장

저는 1963년 늦은 가을 서울에 사는 큰누님 댁을 가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서울역 앞에서 경찰에 붙잡혀 서울시립아동 보호소에 넘겨진 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향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강제로 부랑아 수용 시설인 경기도 선감학원으로 짐짝처럼 실려 갔습니다. 이후 '부랑아'로 불리며 그곳에서 5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곳 수용소 수용인원은 45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각심사·세심사·일심사·성심사 등 506개동의 기숙사와 축산부, 식당, 관리사무실 등 일제강점기때 건물들이 그대로 있었고 기숙사 1개동에 80명 정도 인원이 몇 개 반으로 편성되어 2030명 단위로 나뉘어져 매일 매일 일본 군인들이 하던 제식훈련을 그대로 반복하며 훈련하였고 낮에는 집단농장과 작업장에서 계절별로 바뀌는 농사일과 각종 가축 기르기 등 국민학교 2학년 나이에 견디기 힘든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50여년 전에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강냉이 보리밥마저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너무 배가 고파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떠밀어 헤치며 먹을 것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반복되는 구타와 원산폭격, 한강철교 등 기합, 손가락에 연필을 넣고 돌리는 고문 등 온갖 사람을 괴롭히는 잔혹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잘 때 불침번서기, 칼잠을 자면 이불에 나는 지린내에 언제나 손에 잡히는 이, 칫솔도 없이 모래로 이를 닦고 세탁비누도 없이 원아복을 빨아 입어야 했고 손톱깎기 없이 손톱을 다듬는 등 어린아이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몇 년 지나면서 나라살림이 나아졌는지 세탁비누는 6명당 한 장이 보급되어 나일론 줄로 6등분하여 사용하였고 죽지 않을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노동은 계속되었고 어린이 키만 한 곡괭이 자루로 구타하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를 곡괭이로 내리치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 다음에 오는 간지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한대가 더해질 때 공포감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몸속 깊숙이 생긴 멍은 여름에 저수지에서 목욕을 할 때 원아들의 엉덩이를 보며 서로 부여잡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5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 글을 쓰면서 그때의 고통이 생각나 온몸이 떨려옵니다.

갑자기 목에 치밀 올라오는 설움과 뜻 모를 격한 감정은 그 시대가 나에게 준 잊지 못할 의미 있는 떨림입니다. 얼마 전 부산형제복지원 생존자의 증언이 시공을 초월하여 그들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 마음은 그 상황이 낫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흘러나 지금은 세 아이의 아버지이며 사회인의 일원으로써 오늘을 살고 있지만 어릴 적 마음의 상처로 사랑을 베풀 줄 몰라 아이들과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크나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지금도 못한 아버지 못한 남편이란 자괴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지만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암울한 과거사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육신이 망가진 여러 동료들은 지금도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며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1964년 10월 26 일자 경향신문 기사가 말해주듯이 집 앞에서 놀다가 파렴치한 공무원 단속반에 반항도 변명도 해보지 못하고 잡혀 수년간 수감 되었다가 집도 부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는 생활을 한 뒤 이산가족이 된 여러 동료들도 이제 60대 중반에 노인이 되어 지난날들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포악스러운 단속반들과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선감학원 직원의 운영 결과가 이러한 현실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한 켄레의 양말과 장갑도 주지 않아 검은 고무신 한 켄레로 뺏속까지 스며드는 추운 겨울을 지내고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썩어가는 손가락 발가락을 보면서 가려움과 고통에 잠을 잘 수 없던 시간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겨울이 오면 발가락 양말을 겹겹이 신어야 합니다. 겨울에 국민학교 203학년생에게 뽕뽕 언 땅을 개간한다고 곡괭이와 삽으로 밭을 일구고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기르며 고치를 생산했지만 원생들은 비단 옷은 고사하고 밀가루 포대로 만든 옷을 입고 자란 것이 전부입니다. 연필과 공책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려 강제노동을 시키고 수용소에 비인간적 생활로 인한 현재 많은 동료들이 본인들의 장애조차 느낄 줄 모르고 장애가 아닌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과거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밝혀주시시오. 10살도 안된 어린이를 부모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랑아로 취급하여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 강제노동과 구타로 폐인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여겨 수백 명의 어린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야산에 팽개치듯 묻어놓은 무덤을 정비하여 어린 영령들을 달래주시시오.

선감학원 운영의 잘못으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안고 사는 선감학원 출신 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봄날은 있었는가?

이대준 |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과거 50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려니 머리가 아파지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1967년 아홉 살 정도 나이에 선감도의 강제로 납치되어 잡혀 들어 왔습니다. 제가 선감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원에 있는 중앙정아원이란 시설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희들은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시장 구경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뭐 먹고 싶으냐?” 하면서 저희들을 한곳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맛있는 것을 사 주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다른 아저씨들하고 경찰관 하고 저희들을 꼭 잡더니 강제로 변쩍 들어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저희들을 차에 던지듯이 태우더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이미 버스 안에는 제 또래 정도 되는 아이들 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겁 먹은 얼굴로 저희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납치된 아이들을 바라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저씨 저희들은 중앙 정아원에 있는 아이들인데 학교 끝나고 시장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잡아왔냐고 하면서 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아저씨들은 “보내 줄 테니 울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엄마 올 시간이라고 하면서 보내 달라고 했지만 아저씨들은 우는 아이들을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서 조용히 있으면 보내 준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들을 파출소로 데려 왔습니다. 파출소 안에도 아이들 서 너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저희들을 강제로 버스에 태우고 마산포 선착장을 거쳐 선감도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한 납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둡워지기 시작했고 선감 학원 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사를 한 다음 저녁을 먹고 각 사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은 어린이들로서 누릴 수 있는 조그만 자유마저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린이들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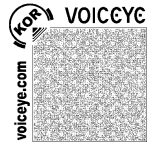
각자 숙소로 배치되어 들어갔는데 숙소 안에는 머리를 뽀뽀 깎은 소년들이 신기한 듯 저희들을 무섭게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숨을 죽인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탓인지 온 몸이 마비가 올 정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지나고 다음 날부터 저희들은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자고 일어나면 밤새 누가 도망갔나 인원을 점검하고 세면장 가서 대강 씻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기 전에 식당 앞에서 인원 점검을 또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안 오면 그 사동 아이들은 올 때까지 식당 앞에서 '원산폭격'이라고 굴 껍질이 깔린 땅에 머리를 대고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다 해도 아침 먹고 선착순을 합니다. 각 4동 별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선착순 5명!'을 합니다 기합을 안 받으려면 밥을 먹다가 나오거나 아예 먹지 않고 달려와야 합니다. 밥이 정량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아침 먹고 기합을 다 받고 나면 사무실 앞 큰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를 합니다. 이때 선생님과 원장님이 연설을 합니다. 물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침 먹고 학교로 바로 갑니다. 아침 조회 때도 식사별로 인원점검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또 다시 단체기합을 받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각자 맡은 일터로 갑니다 물론 학생들도 학교가 끝나면 점심 먹고 점심조회를 한 뒤 각자 맡은 강제노역장으로 갑니다. 이때 선감학원에 납치된 아이들은 대부분 10살 내외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거나 염전일, 축산일, 누에 키우는일, 연탄이나 새우젓이 들어올 때는 하루종일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을 하고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 등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은 친구끼리 웃으면서 예쁜 코스모스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저희들의 어린 시절은 구타와 강제노역 굶주림에 두려움 공포스러운 가혹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소 여물을 쓸다가 손가락이 잘려 나간 아이도 있었고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 빠따를 맞다가 빗 나가서 다리 병신이 된 아이들도 있고 물론 죽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곡괭이 자루 맞는데 제가 피하다 곡괭이 날 부분이 제 허벅지를 찔러 지금까지 훈장처럼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배가 하도 고파 급식으로 나오는 건빵을 훔쳐 먹었다고 그날 바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문득 퇴학시킨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며 욕하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퇴학을 당했던 그날부터 선감학원 사무실에 꿰어앉아 며칠 동안 기합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매 맞다보니 또다시 도망 갈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탈출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 1% 정도뿐입니다. 99%는 모두 실패한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한테 들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 한 분은 선감학원에서 밀가루를 한 꾸데를 줍니다.

탈출하다 죽어 시체로 떠밀려온 아이가 있는가하면 탈출에 실패해서 바다로 떠내려가 시체도 돌아오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먼 바다로 떠밀려가 물고기밥이 되어버립니다. 죽어 돌아온 아이는 직원들 입회하에 저희들이 바다에서 건져 가마니로 둘둘 말아 땅을 파서 직접 묻어 주기



도 했습니다. 선감학원 직원들은 죽은아이들을 도망갔다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기간도 없이 이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독일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열 살도 안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9년간 수용생활을하면서 하루라도 기합이나 매를 안 맞은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도망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도에 탈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어 사회에 나와 보니 저에게는 이해 못하는 규칙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선감학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피해생존자들은 당시 선감학원에서 당했던 끔찍한 생각들 때문에 슬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죽은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저희들도 과거에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당시의 후유증으로 매일 약을 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선감학원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운영했고 저희들을 가혹하게 구타하며 강제노동을 시킨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강도, 살인, 폭행, 절도, 강간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국가에서는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직업소년, 부랑아, 고아,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을 아무런 이유나 법적근거도 없이 납치해서 감금하고 모진 구타와 기합으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나이가 들면 무책임하게 1원 한푼 없이 사회로 방출시켰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와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길게는 10여년간 모진 구타와 가혹한 기합을 주며 강제노역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국가는 선감학원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분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감학원 때문에 개죽음 당한 아이들에게도 국가차원에서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현재 생존에 있는 동료 들 분들에게도 어릴 때 국가에 의해 씌여진 불명예를 회복시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발제 1.

선감학원의 역사와 인권침해 실태

하금철 | 비마이너 기자

선감학원의 역사와 인권침해 실태

하금철 | 비마이너 기자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일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서도 안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정당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오늘날 정상적인 인간 중에서 히틀러, 힌러, 괴벨스, 아이히만 등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안도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들의 말(이는 안타깝게도 행동으로 옮겨졌다)이 이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나치즘의 증오 속에는 이유가 없다. 그 증오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밖에 있다. 파시즘이라는 유해한 나무에 열린 유독한 열매지만, 파시즘 밖에 그것을 뛰어넘는 곳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하며 경계해야만 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의식이 또다시 유혹을 당해 명료한 상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까지도.”

-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중에서

○ 선감학원의 역사

- 1912년 : 경찰범처벌규칙 제정. 행령병자나 정신병자, 기아, 미아,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등 거리를 부랑 하면서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무리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30원 미만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
- 1923년 : 조선감화령 제정. “연령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동을 할 우려가 있고 적당한 친 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자” 등에 대해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923년 : 조선감화령에 근거해 최초의 관립 감화원으로 함경남도 문천군에 ‘영흥학교’ 설립. 이후 여러 사립 감화원들이 세워짐.
- 1938년 : 전남 신안군에 ‘목포학원’ 설립.
- 1942년 : 경기도 부천군 선감도에 ‘선감학원’ 설립. 경기도사회사업협회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위탁 받아 설립, 운영.
- 1946년 : 일본 패망, 선감학원을 운영하던 일본인 직원 본국 귀환. 선감학원 운영권이 경성부 상부 기관인 경기도로 이관.
- 1954년 : 주한 미1군단 원조사업(AFAK)으로 사무실, 교사(校舍), 아동 및 직원관사, 병원, 목욕탕, 식당 등 총건평 2,613평 모두 41동의 건물 신축.
- 1955년 : 한미재단 원조금 1300만환으로 건물 보수 및 직업보도시설 마련.
- 1957년 :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 제정.
- 1961년 : 아동복지법 제정. 부칙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감화원을 아동복지시설로 간주한다는 조항 삽입.

1. 일제강점기 불량소년 대책과 감화원의 탄생¹⁾

일제는 1912년 <경찰범처벌규칙>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불량자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아동(부랑아) 단속과 강제수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흐름은 1923년 <조선감화령> 제정부부터다. 이 법령에 근거해 선감학원이 만들어졌다. 조선감화령은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수용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경찰은 현행범과 비현행범을 가리지 않고 “평소부터 주목하여 온 불량소년” 혹은 “거동이 수상타고” 간주된 소년들을 일단 검거하였고, 범행 내용은 자백을 통해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중후반이 되면 경찰들은 불량소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치해두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때마다 그러한 리스트를 활용하여 불량소년들을 검거하였다.²⁾

그렇다면 불량행위란 대체 무엇인가? <조선감화령>에는 어떤 행위가 불량행위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1920년대 이후 언론에 나타난 불량소년 보도 기사를 보면, 불량소년들이 저지른 불량행위는 매우 광범했다. 불량행위는 절도나 빈집털이, 폭력, 술주정하며 행패부리기, 성추행,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부랑하는 행위, 사상범, 음주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한 행위가 포괄되고 있었다. 불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어 갔고, 1930년대에는 불량소년소녀의 단속을 위한 별도의 취체계를 신설하는 등³⁾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법과 경찰에 의한 일상통제가 강화되어 가는 속에서 ‘공공의 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혹은 ‘미성년에 어울리지 않는’ ‘불량행위’는 다양하게 양산되어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명백한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들의 취미나 기호, 행위양태에 이르기까지 선량과 불량,의 잣대가 작동하며 불량행위가 구성되어갔다. 1934년 경성보도연맹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내 불량학생으로 경찰에 발각되어 전부 421명이 설유 혹은 처벌을 당하였는데, 이들이 범칙한 내용은 정복과 정모를 쓴 채로 음식점과 카페, 요리집, 유곽 등에 들어가서 먹고 놀고 행패한 것과 마작구락부에 출입하여 마작한 것, 학과시간에 활동사진관에 가서 관람한 것, 백화점에 가서 소매치기 한 것 등이었다.⁴⁾

이를 통해 볼 때, 불량행위란 그 자체로는 규정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소년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 가능한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아, 고아, 빈아, 남의집살이를 하는 소년소녀들, 모던 보이, 모던 걸, 총독정치를 비판하는 사상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가 불량소년의 대열에 포함되어 갔다.

1)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4장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소현숙 교수 작성)

2) 「핑그러지는 유소년범죄」, 『매일신보』, 1937.5.30.; 「가두에 방황하는 불량소년 총검거(인천)」, 『동아일보』, 1938.6.23.

3) 「취체계신설 불량소년단속, 학교와 가정과도 연락해 본정서에서 初試」, 『동아일보』, 1932.2.4.

4) 『동아일보』, 1934.12.5.

이에 최초의 감화원을 1923년 영흥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규모도 작고 운영 또한 전시적인 수준이었다. 총독부는 소년 감화사업 보다는 사법적 기구인 형무소를 통한 소년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는 불량소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법적인 처벌이 아닌 감화교육을 통해 선량한 인간으로 만들어낸다는 감화원의 목표는 불량소년의 정상적 사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오히려 문제는 감화원의 설립에 총독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조선인들은 직업을 얻지 못한 소년들이 가두에서 방황하며 결국 불량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고, 사회문제 중에서도 너무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푸대접 받고 도외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감화교육기관이 영흥 한곳 밖에 없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였다.⁵⁾

그러나 불량소년에 대한 감화교육이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동시에 “사회 병독이며 악성의 박테리아”로서 “선량한 소년소녀에게까지 정신적 질환을 전하는 불량소년소녀를 근절”시키기 위한 격리의 의미도 있었다.⁶⁾ 불량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감화원을 증설하라고 주장하였던 1938년 동아일보의 논설은 “선천적 혹은 가정적 불량소년은 백에 하나나 천에 하나 밖에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절대다수는 “동료 중 불량자의 감언이설적 유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1인의 불량소년을 등한히 방치한다면 급기야에는 그와 상종하는 소년 전부가 불량색에 물들고 말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불량소년 선도를 위한 감화원 증설에 당국이 더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다.⁷⁾ 이 논설에서는 불량소년에 대한 보호보다 격리를 통한 사회의 안전 확보로 강조점이 옮겨지는 양상마저도 감지된다. 즉, 불량소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범죄 전”에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설 수용과 감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범자 처벌의 반인권적 요소는 쉽게 용인되고 있었다.

불량소년을 감화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일제 측 사법관료들의 요구와 조선인들의 요구가 조선총독부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말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에는 전시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거리의 불량자와 청소년층에 대한 권력의 감시·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종래에 소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던 동정적 구제”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원 양성이라는 견지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권력 당국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졌다. 일제는 불량아와 불량소년들을 “국가 산업의 침병”이자 “산업전사”로 길러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1940년 5월30일 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스즈카와(鈴川)는 취임사에서 경성에 있는 토막(土幕)의 정

5) 「(시평)불량소년의 감화교육기관, 『동아일보』, 1932.12.24.
 6) 「불량소년은 사회적으로 구제 직접으로 감화시킬 것이다, 『매일신보』, 1928.5.4
 7) 「(사설) 불량소년의 선도문제, 감화원 증설이 해결 절경, 『동아일보』, 1938.9.17.

리와 부랑아의 일소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경기도에 새로운 감화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사회시설에 대하여 측면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조선사회사업협회’를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켜 전면에 내세웠다.⁸⁾

이에 따라 1941년 10월 경기도 사회사업협회는 기부금 50만원으로 선감도 전체를 매수하고 1941년 겨울 76호의 선감도 주민을 도외로 철거시키고 일반 독지가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기도는 1942년 4월 20일 “총후의 깨끗한 황국신민”을 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선감학원을 개원하였다.⁹⁾ 개원 초기에는 1차로 200여명이 수용되었으나 500명까지 수용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시동원 하에서 행해진 이러한 불량소년의 국민으로서의 호명과 시설에의 수용은 그 ‘보호’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노역자와 전사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초래되었음은 선감원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이를 선감학원에서의 원아들의 생활을 통해 살펴보자. 당시 원아들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 등에 근무하던 소학교 교원과 순사 및 형무소 간수 등이 파견되어 담당하였다. 이들은 전체 원생을 민가를 수리하여 만든 숙사인 료(寮)에 분리 수용하고, 각 료는 한 명씩의 료장을 선임해 관리하도록 했다. 료마다 마루 정면에는 “무적황군의 승리 기록의 사진”이, 교사 건물 정면 현관에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역일심(一億一心)’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1943년 11월 당시 선감학원 야외 교육 장면 사진을 보면 칠판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원생들을 지도한 것이 확인된다. “천황폐하의 감사한 호의로 우리들도 군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명예로운 일본의 군인이 된다는 일은 더 없는 행복이다. 나는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닦아서 훌륭한 청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원병이 되어 천황폐하의 고마운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¹⁰⁾

그러나 선감학원의 억압적인 운영은 끔찍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선감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전역한 군인, 경찰로 이뤄진 교관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잘못된 경우 건물 아래 마련된 지하 감옥에 갇혀 고문과 금식의 처벌을 받았다. 결국 과중한 규율과 처벌, 부실한 급식 등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몰매질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탈출하는 원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조류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탈출하다가 잡혀서 구타로 죽거나, 혹은 영양실조, 굶주림 끝에 먹은 독버섯 등의 이유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¹¹⁾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선감학원 측은 원생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

8) 송치호, 「일제시기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9) 「거리의 천사에 낙원, 선감학원 4월에 개원식」 『매일신보』 1942.3.15

10) 하금철, 「한국의 부랑인 강제수용: 빈곤의 범죄화와 사회안보의 적(敵) 만들기」,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논문, 45-46쪽

11) 정혜정, 「일제의 감화교육에 나타난 근대교육의 성격-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감화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1, 214-215쪽; 하금철, 앞의 논문, 46쪽.

여, 훈련된 소년들을 탄광 등에 취업시키는 것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강제동원을 진행하였다. 1944년 선감학원 원생 21명을 강원도 삼척탄광에 산업전사로 취업시켰고, 다시 40명을 탄광에 취업시킨 일이 보도되고 있다.¹²⁾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한 것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조선총독부 사회과 안에 사무실을 둔 조선사회사업협회에서 총독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선감학원에 관련된 사항은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선감학원 내에서의 불법행위의 책임은 민간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2. 무엇이 해방 후에도 선감학원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나?¹³⁾

일제강점기에 만주, 일본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던 동포 등이 해방 직후 대거 귀환(약 250만 명으로 추산¹⁴⁾)했으나, 이들은 생계수단이 없었다. 게다가 미군정 그리고 이후 남한정부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들에 대한 구호정책은 뒷전으로 미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피난민·전재민 등 요구호자로 전락했지만¹⁵⁾, 유동하는 인구로서 피난민은 오히려 군사 작전상 방해요소로 인식되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부랑인 인식과 정책은 이런 경향이 지속변형되는 과정이었으며, 부랑인을 비롯한 (유동하는) 빈곤층을 일종의 ‘비국민’으로 내모는 과정이었다.

일례로 신문지상에서는 거리를 활보하는 부랑아의 존재가 ‘뜻 있는 사람들’과 ‘위정자’에게 “천을 이상의 공포”¹⁶⁾를 주고 있다는 언설이 등장했다. 또 이들은 일정한 숙소 없이 떠돌며 구두닦기, 담배장사 등을 하지만, 실상은 “「어둠의 거리」의 안내인 노릇”¹⁷⁾을 하며 악의 구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 신문기사는 부랑아를 대놓고 ‘재수를 잡치게 하는’, ‘거머리떼’, ‘암적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¹⁸⁾

구체적인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정부는 부랑아를 일소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대책으로 1956년 법무부·내무부·보건사회부 합동으로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

12) 「잘있거라 선감도 이제부터 광업전사」, 『매일신보』, 1944.6.2

13)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5장 요약

14) 이연식, 「해방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 2016, 138-140쪽

15) 1952년 10월 당시 정부는 피난민·전재민 수가 135만 8,909명, 원주빈민은 429만 2,363명으로 파악해 도합 1,065만 2,272명이 요구호자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체 인구 1,887만 5,106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구호를 받고 있는 인원은 525만 3,626명으로 전체 요구호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신문,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구호대상」, 1952.10.01)

16) 「전쟁 이면의 사회상」, 『경향신문』, 1952.05.27

17) 「거리의 불량아」, 『경향신문』, 1952.04.13

18) 「거지단속을」, 『경향신문』, 1958.02.19

회의에 제출한다. 이 대책은 부랑아의 “철저한 단속과 보호책을 강구하여 부랑아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수용보호, 본적지 송환, 배후자 단속, 부랑행위의 방지, 기타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관계부처의 공동책임 하에 이를 강력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부랑아보호책 실시요령(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랑아보호책 실시요령(안)

1. 중앙과 지방에 각각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부랑아보호대책위원회 설치
2. 부랑아 배후관계자 단속강화
3. 부랑아 보호에 대한 계몽 (값싼 동정과 일시적 시여의 자제 권고)
4. 부랑아 보호취체의 강화 (연고지·본적지 이송 또는 분산수용, 경찰관, 역원, 학교교직원, 지방청 공무원, 사회사업가, 청소년단원, 학생 및 기타 지방유지의 협력태세 구축)
5. 열차/전차/버스 승객 상대 구걸 방지를 위한 교통기관의 방지책 마련
6. 범죄성 있는 아동의 법원 소년부 송치 및 아동의 성향에 따른 분류수용
7. 가정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부랑아 발생방지

위 내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 단계에서 부랑아 취체와 수용보호를 지시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제안은 부랑아 근절이라는 목표를 위해 민관 합동의 연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949년 유숙계를 실시하면서 외박자 및 유숙자 중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동원했던 주민동원체계를 연상케 한다. 유숙계가 일제시기부터 유지해오던 주민 세포조직인 애국반 체제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거지 이동을 세밀하게 감시했던 것처럼,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 또한 사회사업가, 지방유지, 청소년단원 등 말단조직체계를 동원해 부랑아를 감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¹⁹⁾

이처럼 지역사회의 가능한 채널들을 최대한 동원해 부랑아를 밀어내면서도 정부는 이에 따르는 조금의 재정적 부담조차 지려 하지 않았다. 이 대책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예산이 전혀 없어 민간의 의연금 모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의연금 모금의 책임도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에 일임했고, 모금 기간도 195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 보름에 그칠 뿐이었다. 게다가 보건사회부까지 참여해 만든 대책임에도 구호적 성격은 전무하고 오히려 ‘값싼 시여금지운동’을 전개해 주민의 동정심까지 억제하는 냉혹성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부랑아 일소 정책을 수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였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47년 사직공원 내에 설치된 부랑아보호소로부터 출발했다. 설치 직후 서울시 사회과 직원들은 경관을 대동해 부랑아를 취체(取締)하는 활동을 벌인다.²⁰⁾ 이 부랑아보호소는 “수용

19) 1958년에도 보건사회부 명의로 「부랑아 보호책 확립의 건」이라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제출되는데, 이 또한 1956년의 안건과 대동소이하다.

20) 「부랑아에 구호의 손길! 2백여명을 수용」, 『한성일보』, 1948.12.08

된 아동의 이력을 조사한 후 범죄 경향이 있는 아동은 정상 아동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기관에 수용하고 정상적인 아동은 시 고아원으로 양친있는 아동은 각기 양친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보호소 설치 5개월도 안되어 탈출 아동이 연인원 80명에 달했다는 사실²¹⁾은 보호소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서울의 미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부랑아 및 거지 약 900명을 한 번에 시내로부터 3백리 떨어진 철도가 없는 곳으로 보내거나²²⁾, 아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섬, 심지어 울릉도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²³⁾

사직공원 내 부랑아보호소는 한국전쟁 당시 건물 상당수가 파손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1960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원조비에 국고·시비 지원 총 49,655,000원으로 당시 서대문구 응암동에 1천여 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어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재개소했다. 그런데 1960년 당시 아동보호소의 수용연인원 1831명 중 45%에 달하는 824명이 실제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였다. 이들을 수용하게 된 원인 또한 “생활고, 엄격한 생활, 악우(惡友)관계, 허영심, 사소한 과오에서 오는 공포심, 자주적인 의식, 주위환경의 불순” 같은 식으로 모호하게 명기되어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은 쉽게 부랑아의 특성으로 분류되어 이들을 수용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²⁴⁾ 그 때문에 아동보호소는 언제나 과밀상태였는데, 61년 내내 동시에 수용된 아동 수가 1500명을 넘었다. 당국은 이렇게 ‘쏟아 담은’ 아이들을 부모를 찾아 돌려보내주기 보다는 지방에 분산 수용하는데 열을 올렸다. 당시 신문 보도만 보아도, 61년 8월 10일에 ‘소행이 극히 나쁜’ 부랑아 70명을 목포 고하도의 국립감화원에 보냈고, 18세 이상 노동력 있는 부랑자 450명을 대관령 개간지에 강제노역 보냈다.²⁵⁾ 61년 10월 말에는 아동보호소 수용인원 중 400명을 광주, 대전, 충주, 인천 등으로 분산시켰다.²⁶⁾

해방 후 부랑아 일소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계기를 제공했던 사건은 바로 4·19이다. 50년대 내내 부랑아 문제는 행정 당국에게 크나큰 골칫거리로 여겨졌고 이들에 대한 추방 정책도 계속되었지만, 당시의 아마추어적인 추방 정책으로는 정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부랑인의 불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임계점에 도달한 불만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4·19혁명이었다.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4·19당시 거리 시위의 핵심 동력이자 이를 급진화시킨 주체가 대학생 등 지식인 계층이 아니라 고학생, 신문팔이, 구두닦이, 껌팔이, 녀마주이로 일컬어지는 도시하층민들이었

21) 「도망자가 태반 중앙보호소의 부랑아들」, 『민중일보』, 1948.03.13

22) 「부랑아 추방」, 『조선중앙일보』, 1947.08.23

23) 「고아 릉도에 수용」, 『경향신문』, 1952.06.07

24)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발간 자료, 「概況」, 1961

25) 「浮浪兒 70名을 木浦 感化院에」, 『경향신문』, 1961.08.11

26) 「지방분산수용 서울 부랑아 사백명」, 『동아일보』, 1961.10.24

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4월 혁명 당시 사망자 수 통계를 봐도 사망자 186명 중 하층노동자(61명), 무직자(33명)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4월 혁명을 촉발한 3월 마산시위에서도 272명의 부상자 중 무직자가 15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²⁷⁾ 그런데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데모’를 멈추지 않았다. 반면, 대학생들은 4월 26일 이후부터 스스로 혁명의 주체로 자임하고 ‘질서회복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학교별로 조를 짜서 거리 청소, 질서 확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성난 시위 군중을 진정시켜 해산시키기도 했다.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며 언론은 “대학생의 지성이 없었던들 이번 혁명의 사태는 무지한 파괴로 끝났었을지도 모른다”라며 대학생들을 한껏 치켜 올리기도 했다.²⁸⁾

1960년 봄, 도시하층민들은 그간 쌓여온 자신들의 응분을 가로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당시의 밤거리를 휘저으며 터뜨렸다. 그것은 대학생들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또는 ‘신생활운동’이라는 말로 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어떠한 언어로 정확히 표현되지는 못했지만, 극심한 빈곤과 생활고에 짓눌려 있던 이들의 분노는 결코 이승만 하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들은 거리 시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많이 죽었지만, 혁명 이후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4·19의 고귀한 희생’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들의 행동은 1960년 6월 1일 정국 수습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곽상훈 민의원의 의장이 한 말처럼, “이제 (4.19혁명의) 뒷수습과 그 목적인 방향으로 향해”가야 할 이 시점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과 학생들이 배후에 불순한 사주를 받아 평화롭고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는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파괴폭행이 나오는 사례”로 치부될 뿐이었다. 곽 의장은 이러한 자들을 “4.19의 신성한 희생을 이용해가지고 그 그늘을 이용해 가지고해서 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을 “속속 검거해서 엄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불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²⁹⁾ 즉, 이들 도시하층민의 거리 시위는 혁명도 무엇도 아니고, 그저 무지하고 불순한 자들이 정치의 장에 ‘난입’한 ‘폭동’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이에 부응하듯, 4·19이후 부랑아 단속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부랑아 수용인원은 1960년 8월 24일 시점에 이미 전년도 부랑아 수용 후 전원조치 인원(7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80% 이상이 4·19이후 잡혀온 인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던 6월 9일 단속에서는 한번에 561명의 부랑아가 아동보호소에 잡혀 들어왔다고 한다.³⁰⁾ 이는 ‘4·19 의거 학생대책위원회’가 자진해서 문교부, 국무원 사무국, 국방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아이크 환영준비 학생위원회’(‘아이크’는 아이젠하워의 애칭)를 구성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³¹⁾

27) 이승원, 「‘하위주체’와 4월 혁명 —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기억과 전망 20호, 2009

28) 오제연,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106호, 2014

29) 제4대 국회 회의록, 「치안유지 대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연석회의」, 1960.6.1.

30) 경향신문, 「서울을 떠나는 꼬마 이민열차」, 1960.08.24

31) 천정환 외, 같은 책, 119쪽

즉, 지식인과 지배계급은 4·19의 목소리 중 ‘교양있는’ 대학생들의 그것은 수용하고, 반대로 ‘몰지각한’ 도시하층민들의 불만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치부하며 배제하고 억압했던 것이다. 그 결과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른바 ‘혁명정부’는 혁명에 대한 반동(reaction)으로서 범죄의 형상을 만들고 이를 도시하층민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혁명의 주체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주저앉히고자 했다.³²⁾ 60년대 이후 선감학원 운영이 더욱 팽창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3. 선감학원 운영의 재개

해방 이후 1946년 2월 미군정은 주로 경성의 부랑아 수용을 목표로 하였던 선감학원 시설을 경성부의 상부기관인 경기도에 이관하였다. 1946년 8월 서울이 특별시로 독립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이탈하여 중앙 직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울의 부랑아수용을 담당하는 선감학원은 1982년까지 계속 경기도에서 운영하였다. 그러나 운영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몇 개의 조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조례마저도 운영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로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선감학원의 파행적인 운영은 예정된 것이었다.

1950년대 초 선감학원 직원으로 근무했던 안○○의 증언³³⁾에 따르면, 50년 10월 당시 수용아동은 80명 수준으로 대부분 전쟁고아였다. 대체로 10대 아이들이었으며, 20세 이상도 간혹 있었다. 이듬해 1.4후퇴 이후로는 5~10세 아동도 수용했고, 한차례 여자 아이들도 들어온 적이 있으나 얼마 후 경기도의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되었다.

전쟁 과정에서 미군들이 섬에 주둔했고, 1954년 4월 주한 미1군단 원조사업(AFAK)으로 사무실, 교사(校舍), 아동 및 직원관사, 병원, 목욕탕 식당 등 총건평 2,613평 모두 41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다.³⁴⁾ 미군이 철수한 뒤 선감학원은 경기도에서 수용시설로 운영하였다.

1955년 9월에는 한미재단 원조금 1,300만원으로 주한 미1군단 원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을 보수하고 직업보도시설을 마련하였다.³⁵⁾ 막대한 시설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원생들의 생활은 극히 열악하였다. 군대식 규율과 굶주림과 강제 노역이었다. 그들은 흡사 죄수들처럼 머리를 박박 밀리고 동일한 색

32) 권명아, 「이브의 범죄와 혁명」,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33) 「한국전쟁기 선감학원의 운영과 실태」, 국사편찬위원회 2008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면담연구자 임송자·이병례·김미현)

34) 『경인일보』, 1956.08.30

35) 『경인일보』, 1956.08.30

깎의 옷을 입은 채 하루 종일 농사일과 청소와 풀 뽑기에 내몰려야 했다. 굶주림의 고통과 함께 가해진 군대식 규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억압으로 원생들을 괴롭혔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1년 11월 박창원(朴昌源) 경기도지사는 도립 선감학원을 시찰한 후 선감학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제반 대책 언급하였다.³⁶⁾ 그러나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청소의 대상으로 여겼다. 주요 도시와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국가 체면을 손상한다는 이유로 부랑아의 수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 없는 강제 수집을 진행하였다. 무조건적인 단속은 그 과정에서 부랑아의 인권을 짓밟았고, 수용되는 아동들은 보호받을 수 없었으며 단속의 숫자는 업적으로 평가하였다³⁷⁾. 특히 1961년 5.16 군사쿠데타 군정은 단속한 부랑아 수 및 그 수적인 감소를 근거로 이전부터 계속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하면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부랑아의 삶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은 할당량이 정해진 일제 단속기간에는 연고자도 명확한 아이들까지 잡아 선감학원에 넘겼으며, 끌려온 아이들은 매일같이 고향이로 매질을 당하고 광활한 토지를 일구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1960년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아동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수용되어 굶주림에 허덕이며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선생과 사장 반장에 의한 구타를 통하여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의 특혜를 받은 사장(기숙사 원생대표)에 의해 집단적인 구타가 이루어졌다. 사회악으로 규정되었던 부랑아는 중노동에 시달리며 인신적·경제적 구속을 받아야 했다. 1963년 경기도 조례 제 176호로 제정된 조례는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정하지 않았다. 1965년 조례에는 업무 내용에 농지 및 염전관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1인 1기에 교육지도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나 이 역시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4. 해방 이후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현재 생활상 설문조사³⁸⁾

본 연구는 선감학원 입소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현재 생활상과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해자들의 모임인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 대책위원회’에는 약 70여 명의 피해자가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진상 규명과 피해대책 마련 촉구 활동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지난 2018년 2월 3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30명 이상의 피해자가 참석했으나, 시간의 제약 상 28명의 피해자의 설문 결과만 수합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초 경기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진행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가 피해

36) 『인천신문』, 1961.11.24

37) 김아람(2011). 「5·16군정기 사회정책 — 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82, 331쪽

38)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7장 요약

자들의 입소 당시 피해경험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설문조사는 피해자들의 현재 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기 피해경험이 지금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계량화된 형태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조사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현재 파악된 피해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폭력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아래 통계에서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반영했다.

① 설문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선감학원 소년 감화원이었기 때문에, 설문에 응했던 피해자 28명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또한, 이들의 연령(만 나이 계산), 현 거주지역, 혼인 여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등은 아래 <표1>, <표2>, <표3>, <표4>와 같다.

피해자의 연령은 50대 후반이 절반 이상(16명, 57.1%)을 차지하며, 60대 초반(9명, 32.1%)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거주 지역은 인천 또는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선감학원 퇴소 후 대부분 인천에 거주지를 자리 잡고 살아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인 상태를 보면,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12명, 42.9%), 미혼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8명, 28.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수에서도 독거가구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1> 피해자의 연령

연령	40대	50-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합계
빈도	1	1	16	9	1	28
비율	3.6%	3.6%	57.1%	32.1%	3.6%	100%

<표2> 현재 거주지역

거주지	서울	인천	경기도	기타	합계
빈도	1	16	7	4	28
비율	3.6%	57.1%	25.0%	14.3%	100%

<표3> 혼인 상태

혼인 여부	미혼	결혼	별거·이혼	재혼	합계
빈도	8	12	6	2	28
비율	28.6%	42.9%	21.4%	7.1%	100%

〈표4〉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수

가구원 수	독거	2명	3명	4명	5명	합계
빈도	11	5	4	5	3	28
비율	39.3%	17.9%	14.3%	17.9%	10.7%	100%

피해자들이 선감학원 퇴소 후 주민등록(호적)을 다시 만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원생들이 선감학원에 강제입소 되면서 기존에 함께 살던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 가족들이 이들을 사망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퇴소 후 자신의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진상조사에서 진행한 피해자 구술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³⁹⁾ 이에 이번 설문에서는 실제 피해자들이 퇴소 후 호적 변경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값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민등록(호적) 변경 유무

변경 유무	있다	없다	합계	변경 사유	사망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기타
빈도	8	20	28			
비율	28.6%	71.4%	100%	빈도	3	5

*기타 내용 : “선감학원에서 만든 호적을 부모 찾고 나서 새로 만들”, “원래 주민등록이 없었음. 선감학원 퇴소 후 처음 만들”, “행방불명” 등.

39)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최종보고서』, 2017.

② 입소 경위

입소 전 같이 살던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정도가 고아였다고 답했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친척 또는 형제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답하는 경우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다(〈표6〉). 즉, 상당수가 (연고자 유무를 따지지 않고 실행되는) 부랑아 단속에 의해 잡혀온 경우이고, 다른 시설에서 전원조치 되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소 전 다른 시설 수용 경험이 있는 사람 수가 〈표6〉에서의 고아·고아원이라 응답한 사람 수보다 많은 것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아동들을 경찰 단속에 의해 바로 선감학원에 보내지 않고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을 거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준다. 실제 입소 경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인계되었다는 답이 월등히 많았고, 고아원에서 전원조치 되었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과정에서 입소 동의 또는 고지 절차는 거의 없었던 것 또한 확인된다(〈표8〉).

〈표6〉 입소 전 함께 살던 사람

유형	가족 (부모님 포함)	가족 (형제 또는 친척)	고아	고아원	합계
빈도	11	3	6	8	28
비율	39.3%	10.7%	21.4%	28.6%	100%

〈표7〉 입소 전 다른 시설 수용 경험

	없음(8)	있음(20)*		합계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기타	
빈도	8	17	8	28
비율	28.6%	71.4%		100%

* '있음' 이라 답한 사람 중 5명은 두 군데 이상 시설 수용 중복 경험

〈표8〉 입소하게 된 이유 및 입소 동의·고지 절차 유무

	경찰에 의해 인계	공무원에 의해 인계	고아원 등에서 전원조치	기타	합계	입소 동의·고지 절차	
						유	무
빈도	16	5	6	1	28	1	27
비율	57.1%	17.9%	21.4%	3.6%	100%		

응답자들의 선감학원에서의 생활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70%를 넘어섰다. 이는 실제 선감학원 원생들의 평균적인 입소 기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올해 1월 경기

도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진행한 조사⁴⁰⁾에서는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해 경기도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1955~1982년까지의 선감학원 퇴원아대장 4691건을 열람·조사했는데, 이 중 입소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약 1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 중 상당수(15명, 53.6%)가 한 번 이상 탈출 시도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탈출을 하려다 실패할 경우 엄청난 보복적 폭행이 가해졌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몇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탈출을 통해 퇴소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탈출 외에는 선감학원 바깥의 삶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학원 외부와의 최소한의 연락도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응답자 전원 선감학원 외부의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 불가능했다고 답함). 당연히 섬 밖으로의 외출도 불가능했는데, 응답자 중 단 1명만 외출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선감학원에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사실상 직원으로 생활했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표9〉 입소 기간

기간	1~2년	2~3년	3년 이상	정확히 모름	합계
빈도	2	5	20	1	28
비율	7.1%	7.9%	71.4%	3.6%	100%

〈표10〉 탈출 및 반복 수용 횟수

	탈출경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합계
빈도	11	9	3	3	28
비율	39.3%	32.1%	10.7%	10.7%	100%

*탈출 이후 붙잡혔을 때 학원 내 보복 조치 : “구타를 당하다 손가락 뼈가 다치고, 허리 뼈가 주저앉았다.”, “원생 전원 구타와 기합”, “주동자로 지목되어 곡괭이 자루로 발바닥, 엉덩이 등을 엄청나게 맞았고 한달 간 거동을 못했다.” 등.

〈표11〉 퇴소 사유

	성인이 되어 퇴소조치	탈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취직 및 인근 가정 위탁	시설 폐쇄	가족이 데려감	합계
빈도	2	13	6	4	1	2	28
비율	7.1%	46.4%	21.4%	14.2%	3.6%	7.1%	100%

40)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2018.01, 39쪽

③ 퇴소 이후의 삶

▷ 퇴소 직후

피해자들은 선감학원 퇴소 직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는 선감학원이 내걸었던 목표인 ‘부랑아의 보호 선도 및 갱생’이라는 것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퇴소 직후 5년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되는 인원이 ‘구걸 및 부랑생활’(구두닦기 등 포함)을 했다고 답했다(〈표12〉). 이는 부랑생활을 생활을 끝내고 소위 ‘정상적인’ 사회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선감학원의 목표는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인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40%에 가까운 인원이 선감학원 퇴소 후 다른 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표13〉). 즉, 퇴소 후에도 부랑생활을 전전하고나 다른 시설을 오가며 버려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궁핍함을 해결할 길이 없게 되자 몇몇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표14〉). 이 교도소 재소 경험은 타 시설을 전전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표12〉 퇴소 직후 5년간 생계유지 방법

	선감학원에서 연계해 준 일자리	구걸 및 부랑생활	새로운 직장 구함	기타	합계
빈도	2	14	7	5	28
비율	7.1%	50%	25%	17.9%	100%

*기타 : “가족이 데려감”, “4-5년 간 머슴살이”, “어도에서 머슴살이” 등

〈표13〉 퇴소 후 타 시설 입소 경험

	있다	없다
빈도	11	17
비율	39.3%	60.7%

* 타 시설 입소 경험 사례

- 25세 때 부산에 여행갔다가 표를 끊어놓고 부산역 대합실에서 잠들어 있는데,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경비들이 깨워서 끌고 감.
- 부천 새소망 소년의 집 (선감학원에 비하면 천국이었음.)
- 인천 BBS
- 인천 선인원
- 안양 귀애 직업보호소

〈표14〉 교도소 재소 경험(소년원 포함)

	있다	없다
빈도	9	19
비율	32.1%	67.9%

▷학력 및 경제 수준

응답자들의 학력 실태도 조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감학원 입소 전 학교 다녔는지 여부 및 선감학원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여부와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감학원 입소 전 학교를 다녔는지 여부에 대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만이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선감학원에 입소해서도 거의 비슷한 인원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고 나오며, 중학교까지 다녔다는 인원은 단 두 명에 그친다. 이렇게 학령기에 선감학원에서 자라면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 결국 현재에도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절대 다수(23명, 82.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헌헌법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제16조)라고 규정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설문을 진행하면서 상당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어린 시절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실을 가장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

〈표16〉 학력 관련

입소 전 학교 다녔는지 여부			선감학원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여부		
국민학교 다님	다니지 않음	학령기 아님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 다니지 않음
13(46.4%)	14(50%)	1(3.6%)	13(46.4%)	2(7.1%)	13(46.4%)

최종 학력						
무학	초등 중퇴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기타
9(32.1%)	5(17.9%)	9(32.1%)	2(7.1%)	1(3.6%)	1(3.6%)	1(3.6%)

기본적인 교육기회 박탈이 미친 결과는 기본적인 문자해독력 등에서도 그 실상이 나타난다. 응답자 중 스스로 한글을 읽지 못한다고 한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5명, 17.9%), 한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는 못한다는 사람도 많았다(7명, 25%).⁴¹⁾ 기초적인 문해력의 결핍은 자연히 현대인의 정보습득의 가장 중요한 창구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서도 제약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7〉 문자해독력

유형	한글 못 읽음	한글 읽음 / 쓰지 못함	한글 읽고 씀	기타 한자, 영어 등 외국어 가능	합계
빈도	5	7	14	2	28
비율	17.9%	25%	50%	7.1%	100%

41)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본 설문조사 중 일부도 조사원이 읽어주고 대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18〉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유무

인터넷 사용 유무		스마트폰 사용 유무	
유	무	유	무
10(35.7%)	18(64.3%)	15(53.6%)	13(46.4%)

현재 경제생활 수준을 봤을 때도 이들의 삶은 열악하다. 기초생활수급자(6명)와 월 100만원 이하 소득 생활자(5명)가 40%에 달한다.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이라 밝힌 사람(7명)도 있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 또는 안정적이지 않은 노무직이어서 항상적으로 이 정도의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재가/자택'에 해당했지만, '고시원/쭈방'과 같은 안정적 주거 형태가 아닌 곳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부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선감학원 입소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해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표19〉 경제적 수입

유형	기초생활 수급권자	월 100만원 이하	월 100-200만원	월 200-300만원	월 300-400만원	월 400만원 이상	합계
빈도	6	5	7	5	1	1	28
비율	21.4%	17.9%	25.0%	17.9%	3.6%	3.6%	100%

〈표20〉 현재 직업

유형	농업·어업·임업	단순 노무직	자영업	운수업	기타	무직	합계
빈도	2	4	4	4	2	12	28
비율	7.1%	14.3%	14.3%	14.3%	7.1%	42.9%	100%

〈표21〉 주거 형태

유형	재가/자택	고시원/쭈방	기타	합계
빈도	23	2	3	28
비율	82.1%	7.1%	10.7%	100%

5. 복지와 갱생이 아니라 빈곤의 분리수거였다.

서울시 중구 양동. 지금은 남대문로5가동에 흡수되어 사라진 동명이다. 현재 서울역 앞 힐튼호텔 주변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7살 나이에 인천에 있는 고아원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던 김○○ 씨는 양동에서 녀마주이 조직에 붙잡혀 죽을 만큼 맞다가 탈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얼마 못가 구걸 생활을 위해 서울역 인근에 돌아왔을 때, 경찰에게 붙잡혀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끌려갔다. 그리고 재차 보내진 곳이 선감학원이었다.

이곳에 관광호텔을 지을 목적으로 재개발 시행인가가 내려진 것은 1979년이다. 이 재개발 시행인가 직전까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故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서울역 앞 양동지대를 '사회악의 대명사'라 말했다. "남산의 서쪽기슭, 서울역광장에 서서 정면에 바라보이는 언덕을 양동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양동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장 밝지 못한 지역의 대명사였다. 즉 광복된 1945년 이후 40년간 걸친 혼란기에 형성된 각종 사회악이 집중적으로 투영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 서울역과 남대문시장을 근거지로 하는 사창소매치기·앵벌이·비렁뱅이·날치기·녀마주이·아편쟁이·노름꾼·범죄자·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양동이었다."⁴²⁾

이렇게 서울시 고위관료에 의해 '도시의 쓰레기'로 정의된 자들은 1984년 4월 조사 당시 1,699가 구였고 이 중 세입자가 1,607가구였다. 이 중 아예 주민등록조차 없는 가구가 321개, 나머지 주민등록이 있는 가구 중 맹인 가구 74개, 신체장애자 가구 43개였다. 서울시가 여기에 관광호텔 목적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도 역시 시설 수용이었다. 맹인·신체장애자 중 가구를 형성한 자는 상계동 장애재활원에, 독신자는 강서구 대린원에 수용하고, 윤락여성은 동부여자기술원에 입소시켰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이주 등이 제시되었다. 손정목은 자신의 책에서 이들을 설득해 이주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토지개발공사 직원 등의 "인내와 집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치하했다.⁴³⁾

하지만 이렇게 관광호텔에 자리를 내어주고 쫓겨난 사람들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서울시 고위관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애초에 이들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드러나서는 안 될 '도시 빈곤의 상징'에 불과했기 때문일까. 그들은 그저 '복지'와 '갱생'을 내세워 시설에 수용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 '위생처리'되고 말았다. 그 덕분에 60년대 말 서울역 앞에서 '수거'당해 선감학원에 끌려간 김○○ 씨는 평생을 수용소를 전전하는 삶을 얻었다.

이렇게 자행된 복지와 갱생을 가장한 '빈곤의 분리수거'는 서울역 인근 뿐만 아니라, 서울 곳

42)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한울, 2003, 202쪽

43) 손정목, 같은 책, 203-4쪽

곳,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해방 이후 수십년 간 자행되었고 그 중 일부가 선감학원에 집결되어 국가폭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따라서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은 이 빈곤을 향한 국가폭력을 끊어내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발제 2.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

김 갑 곤

(선감학원아동폭력피해자대책협의회)

선감학원 사건해결의 해결방안

김갑곤 | 선감학원아동폭력피해자대책협의회

1. 선감학원 국가책임과 과거사 청산과제¹⁾

선감학원의 설치와 그 운영은 국가의 묵인과 방치 및 은폐 하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상시적 폭력이 작용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수용자들에게는 심각하고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망이라는 침해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 수용시설인 선감학원은 그 설치와 운영의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불법한 것이었고, 그 불법성은 국가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관여의 형태로 선감학원의 수용자들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폭력의 행사로 더욱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권력정치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생명 여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국가범죄(state crime)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내에서 지배권을 가진 권력집단이 약자인 개인 및 소수자 집단에게 자행한 인권침해도 국가범죄의 범주로서 포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범죄는 계획적이고, 대량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범죄의 주체에는 제한도 없다. 그럴듯한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인권침해가 가능한 여러 장치들을 교묘히 숨긴 법들이 동원되고,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후원을 받는 집단,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기업이나 민간조직, 법인시설 등이 국가범죄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선감학원이 행정상으로는 조선사회사업협회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는 형태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조선감화령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는 조선총독부가 직접 그 설치와 운영에도 관여한 것이다. 또한 총력전을 위해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는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소년들은 황국신민의 전사이자 노동력이 되었다. 때문에 선감학원 내에서의 인

1) 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아동권권침해 사건보고서』, 8장, 발췌 및 요약.

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책임에 있어 전적으로 민간 법인의 책임으로만 규정될 수는 없고, 일제에 의한 국가범죄이자 중대한 인권범죄라고 규정해야만 한다.

해방이후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도, 선감학원을 통한 강제수용과 감금, 인권침해행위는 국가의 부랑아 일소라는 계획과 국가기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행된 국가범죄이자 인권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부랑아를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제수용, 구금, 강제격리, 강제노동, 강제규율, 일상적인 폭력의 행사, 실종 및 사망, 인간사냥, 노예화 등이 자행되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까지 그 운영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부랑아에 대한 그와 같은 중대한 인권범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부랑아에 대한 단속과 수용의 근거로 존재했던 법령마저도, 그것은 부정의한 법(unrichtiges Recht)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부랑아라고 규정지은 인간을 열등인간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인권을 부정했던 온갖 법령들은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불량소년 및 부랑아의 수집(납치를 포함)과 단속, 입소라는 수용에서부터 시설 내에서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철저하게 불법적이고, 중대한 인권범죄인 것으로서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범죄임이 명백한 것이었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가는 선감학원이라는 민간법인에 의해 자행된 원생들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불법한 강제적인 수용정책과 국가기관인 경찰, 공무원의 불법행위 그리고 수용시설의 불법행위가 총체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진 중대한 국가범죄이자 인권범죄이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범죄는 과거사이면서도 현재의 것으로 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청산이 필요하다. 과거청산의 방식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진상규명), 일어난 일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책임규명), 그때 일어난 일이 옳았는가 틀렸는가(가치), 피해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슬퍼함),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지)의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 또한 과거청산의 5대 원칙으로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 제도개혁, 문화적 구축이 제시된다. 이러한 원칙과 방식은 선감학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책은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인권침해가 자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용납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변혁케 하는 문화적 구축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 시민을 위한 과거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하는 것에 있다.

국가는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각인시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억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를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들을 시행해야만 한다.

선감학원 문제가 국가책임과 과거사 청산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건 바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 제정’에 있다.

선감학원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과거사부문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감학원진상규명특별법 또는 선감학원사건의 진상규명을 포괄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대부분이 진상조사 및 보상, 추모사업 방법, 관련 조직의 설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며, 선감학원사건과 가장 유사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특별법 제정은 관련 추모사업, 조직 운영, 시설 설립 등에 법적 근거를 보장받는 것 이외에 해당 사건의 국가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일제 과거사 부문을 포함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자 명예회복 등 근본적인 지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의회는 2017년 7월11일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선감학원대책위 역시 선감학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23일에는 국회에서 진선미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 등을 밝히고 있으며, 국회에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포괄할 것으로 보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5건을 비롯해 일명 과거청산 관련한 법안이 10여 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국내 유사 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민간단체 위주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현재 경기도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 사업이 추진되어서 다른 사건들 보다 효율적인 입법화 추진이 가능하며,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와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 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되 (가칭) 선감평화재단이 설립 되면 ‘재단’ 등을 중심으로 입법화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인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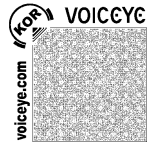
2. 선감도 지역 사회문화 환경과제

선감학원 문제를 경기만 선감도 라는 장소적 맥락에서 역사문화 환경과 의미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선감학원을 포함한 선감도 활동방향을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지역발전, 자연과공존 생태가치와 함께 '경기만의 평화와 번영의 거점' 이라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만: 충남 태안~ 황해도 웅진반도 사이의 만(灣)지역으로 대부도·선감도 일대 포함)

첫 번째, 경기만의 연안평화 번영, '평화와 역사문화 치유공간' 으로서 선감도가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연안의 평화와 공영은 전쟁분단, 남북접경지대인 경기만 현재 최대 과제이다. 선감학원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연안평화 번영, 공존역량 등을 선감도를 중심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선감도 앞바다 풍도해전으로 청일전쟁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이 시작되었고, 일본군국주의 시절 소년감화원 선감학원에서 개설되면서 소년들에 대한 착취, 학대 및 유기가 자행되었던 비극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선감학원 문제는 동시대 역사적 문제이고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거점으로서 이를테면 선감학원 위령비 및 추모공원 등을 설립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상처 치유와 평화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감도가 선감학원 등을 거점으로 경기만의 생태문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해야한다. 이것은 선감도 생태문화적 의미인데, 일단 선감도는 경기만을 대표하는 자연 해안지역이고 경기 수도권 해안의 대부분이 연안과 자연해안이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진 상태에서 ('전쟁'에 의한 민간의 피해와 '생태파괴'에 주민의 피해문제를 함께 봐야 될 필요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선감도는 이중피해 지역)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과 발맞춰 생태문화보전과 복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문제가 이후에 살펴볼 '선감학원 사적화'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선감도 지역과 활동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대 질서 하에서 냉전과 개발로 대표되는 통제, 억압, 상처의 현장에서 생명, 평화, 상생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으로 나아가야 하고 살아있는 생태공간으로서, 지난 상처는 역사의 자산으로서 삼아서 새로운 삶의 문화와 예술, 평화의 의미를 창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 그 방향을 다시 정리하면,

- ‘연안평화’라는 가치로, 연안·바다는 생명평화의 핵심적 메시지로서 자연의 순환과 공존, 공동체적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 그걸 회복하는 과정으로
- 선감도 바다 일대는 근대 질서 하에서 냉전과 개발로 대표되는 통제, 억압, 상처의 현장으로, 생명·평화·상생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
- 해양문화와 역사에 기반 한 ‘연안 예술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서해 지역 발전,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연안 문화 창조 작업 구축의 매개점
- 살아있는 생태 공간으로서, 지난 상처는 역사의 자산으로서 새로운 삶의 문화와 예술, 평화의 의미를 창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3. 선감학원 관련 대책 및 지역 발전안

선감학원 관련 활동과 대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피해 당사자 치유와 회복 대책이며, 둘째 이에 따른 지원방안 및 지역통합 등을 위한 지역대책이다. 그간의 지역적 활동은 선감학원 인권 피해의 실상과 피해자 및 지역상황 등을 알리며 전시회, 토론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의견수렴과 희생자 위령제등을 추진하는 지역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이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피해자-지역주민-시민단체-관이 거버넌스 형태로 진상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 지원방안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2차 피해자인 선감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관련 정책 및 추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통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로서 선감도를 중심으로 한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수립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및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인 우물재산 등지의 유해발굴과 묘지정비, 그리고 추모시설 건립은 선감학원 피해자 및 지역주민들의 1차적 민원사항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현안이다.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에 의하면 전체 조사 영역 내에 약 150구 정도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해발굴, 감식, 보존 관리 등 본격적인 유해 발굴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히 유해발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발굴 후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 추진 등이 희생자 지원은 핵심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

“추모시설이란 추모를 구체화한 시설로써 사람들의 기억과 추모의 행위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구축하여 공간화한 것으로 이것은 전시물, 사건현장의 재현 등 직접적인 방법과 상징, 은유, 구축된 공간의 경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며, 치유의 테마가 중요시 되는 현대 도시 속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설이다.”²⁾

“역사적으로 추모시설은 그 자체로의 완결된 미적, 상징적 가치를 중요시 했지만 현대도시의 추모시설은 공공공간으로서의 체험과 소통과정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관람자들의 체험은 추모시설의 공간구조와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공간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관람자와 긴밀한 물리적, 감성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러한 추모시설 추진 방향성 정립 등이 추모사업 기본계획연구 용역 등을 통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의 국내외 추모시설 조성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명칭, 입지선정, 시설지 규모, 도입 시설, 이용성, 공간디자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분석 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선감학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시설은 기억과 추모를 비롯하여 휴식과 청소년 인권교육의 형태로 계획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 묘지가 아닌 추모와 화해를 위한 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걸으로 드러나는 봉분형태가 아닌 추상적인 조형물 형태로 추모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존의 위령제 혹은 추모제 중심의 사업과 함께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 체험교육, 인권 및 평화관련 연구 수행 등을 실시하는 추모사업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하여 선감도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계획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추모사업 관련 유사 사례 검토

구분	사건개요	추모사업방법	비고
형제 복지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87년까지 부랑인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등을 부산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 강제노역시킨 인권유린사건 • 약 3,000명을 수용한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 무연고자들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 구타증 학재와 암매장등 인권유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민간차원의 노력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진상규명나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 대책위원회, 피해생존자모임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노력, 특별법제정추진, 구술채록집을 발간하였음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직후 1950년 7월 미군이 노근리의 경부선 철조아래와 터널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명을 무차별 사격하여 300여명이 살해한 사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3월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근리 사건 희생자유족회'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평화기념관 교육관 위령탑 등

2) (사)한국조경학회, 2015.『국내외 추모시설 사례 조사분석 연구』

3) 문은미, 2008.「관람자체험을 고려한 메모리얼의 공간표현 특성연구」 『기초조형학연구』 9-6(한국기초조형학회)

구분	사건개요	추모사업방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월 노근리 양민학대책임위원장 정운용이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실록소설을 출간하면서 알려지게 되고, 1999년 9월 미국AP통신 보도로 미국지휘부가 연관된 진상 밝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족회’등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희생자추모 및 유족확인 사업, 추모공원 성역화 사업, 기타지역사회발전사업 등을 담당. ‘평화재단’은 관련 학술대의 개최 교육, 홍보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제주 4·3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7년3월1일을 기점을 하여 1948년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 남로당무장봉기가 발달이 되었으나 강경진압으로 다수의 양민이 희생되었도1999년 국회4·3 특위가 구성되었고 2000년 1월12일 제주 4·3 특별법이 공포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위령제가 4월3일 개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개최. 특별법에 의한 평화기념관 및 공원운영, 진상조사,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평화교류사업등을 담당하는 제주4·3평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위령제단 위령탑 4·3평화기념관등

3.2. 선감학원 피해자 접수창구 및 ‘쉼터’마련, 트라우마 치유허동

선감학원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선감학원에서 퇴원 혹은 탈출한 후 인천등지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다. 현재는 ‘선감학원 아동국가폭력피해대책위원회’(회장 김영배)를 만들어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 선감학원의 실상 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선감학원사건일지 참조),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조사 활동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있다.

○ 선감학원 사건 이슈화 일지

- 1989년 이하라(井原宏光)는 자신이 어렸을 때 과거 선감도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형식의 소설을 펴냄.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각 지역에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일본 극우세력에게 살해위협도 받았음). 1993년에는 문화일보에 소설로 연재
- 1996년 KBS TV에서 「이하라의 고백」 방영
- 2000년 MBC TV 단막극 「선감학원」으로 방영
- 2010년 국회정책토론회 「어린이근로정신대 재조명」(박선영의원실)
- 2011년 KBS TV에서 「이하라의 증언」 방영
- 2012년 경기창작센터의 입주작가 4인 전시회 「선감」
- 2013년 경기창작센터 내 대부역사관 설치(선감학원자료관)
- 2014년 5월 29일 소규모의 선감학원생 위령비 건립
 - 안산지역사연구모임과 경기창작센터의 작가들이 재능기부로 건립
- 2015년 5월 우물재산(선감학원생 묘지) 별초 별목 작업
 - 해방 후 선감학원 강제수용자 출신모임 대표들 작업에 동참
- 2015년 현재 1960년대 선감학원 수용자 출신모임 인천에 결성(약150명)

이러한 ‘선감학원대책위’처럼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피해자 대책지원 활동 일환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 민원접수 창구’ 등을 만들어 ‘희생자 유족회’나 조사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각급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과 자구적인 노력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들 선감학원 관련자들은 무엇보다도 선감도를 고향처럼 여기고 있으며 선감도 내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싶다는 요구가 높다. 현재는 선감학원에 수감되었던 생존자는 고령이 되었으며, 건강상태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픈 과거의 치유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복지 정책의 적극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생존자를 위한 쉼터 공간 역시 무상이 아닌 임대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도지사는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피해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있기 전이라도 최소한 행정적 복지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창작센터 뿐만 아니라 과거 선감학원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용하여 선감학원 관련자들이 편히 왕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향후에는 선감학원이 운영될 당시의 숙소를 개조해 선감학원 관련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피해당사자들 트라우마 치유활동이 시급하다.

선감학원 1차 피해자인 원생출신 피해자들은 선감학원에서 나온 후 30~5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생출신 피해자와 함께 당시 암묵적으로 선감학원 사건을 동조 또는 묵인하였던 주민들도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선감학원 사건의 직간접적 피해자들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시 경기창작센터 내에 별도의 상담실은 운영하여 찾아가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3. 선감학원 역사문화 사적화 및 생태공원화 추진

선감학원의 사적화 및 생태공원화 과제는 근현대 선감학원 역사를 우리 역사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역사문화 기념사업을 통해 연안평화 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으로, 선감도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지역발전,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생태적 가치와 함께 경기만의 평화·번영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사적화 추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역사문화기념 사업’이다. 아울러 경기만 대부·선감도와 선감학원 등을 유·무형 문화 유산으로 삼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역사적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 하다. 이에 특별법 제정등과 관련이 깊겠지만, 정부 나 해당 지방정부 등이 책임적으로 나서지지 않고서는 진상규명과 대책, 보전관리 등의 핵심적인 문제접근과 해결이 불가능하다.

위 ‘사적화 추진사업’은 관과 주민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진상조사, 추모, 주민 및 지역대책 등 분절적으로 진행된 활동들을 통합해 나가고, 특히 이해당사자 합의와 단계적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통합적 대책 마련과 기념사업 등으로 지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 기념 사적화 추진 활동과 함께, ‘생태공원화’ 의미는 경기만 대부도 선감도 그 일대가 최대 갯벌매립과 간척으로 인한(국가개발 권력에 의한 자연생명 파괴) 피해지역이라는 점에서 자연공간과 문화 생태복원이란 맥락으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선감학원 사적화 및 생태공원화’ 추진사업의 의미는 근현대 지역 역사문화 현장과 자연생태 복원이란 점에서 선감도를 아픈 선감학원의 역사를 딛고 ‘연안평화’와 ‘역사문화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지역과 주민 삶의 치유 등을 통해 선감도를 ‘동북아 평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 추진내용 등을 보면,

- 선감학원 ‘특별법’ 및 ‘선감학원 사적화 및 생태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 선감학원 사적화 추진 등을 합의하고, 지표조사 및 기존계획을 수립
 - 경기만 및 선감학원 조사연구자료 사료화 추진
 - 일제침략사와 해방이후 한국사회복지사 주요 유물인 선감학원관사 및 수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존조치 등
- ‘선감학원 사적화 및 생태공원’ 추진내용
 - 지역역사와 상징성 부각
 - : 선감학원 관련 건물 등록문화재 등록 관리
 - : 경기만 선감학원 평화박물관 및 평화공원 조성,
 - : 선감학원 기념관 및 묘지, 위령 추모 공간계획
 - 역사문화·생태교육의 장
 - : 선감학원 역사보존 및 복원, 선감학원 역사 및 경기만 생태환경 전시
 - : 교육 및 체험의 공간, 문화예술 인식제고 등

-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 : 연안평화 및 생태공원 조성,
 - : 선감도 평화마을 에코뮤지엄 조성
 - : 주변마을과 연계 관광코스개발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등
- 복합문화 공간 및 생태사이트 조성 등
 - : 추념과 사색, 학습기능의 문화공간
 - : 인권과 평화, 해양생태 문화 등 생태관광(에코 및 다크투어리즘)

3.4. 경기만 에코뮤지엄 ‘선감도 에코뮤지엄 평화마을’ 조성

에코뮤지엄은 기존의 박물관과는 달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을 계승 보전하면서 이를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는 개념이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은 기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테마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환경, 역사·문화 자원의 파괴 및 공동체 해체를 방지하여 주민에게는 창조적 지역재생, 예술인에게는 공동예술의 창작 기회 제공, 지역경제에는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에 의한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이라 하여 경기만 지역의 시·군에 산재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통합한 브랜드로 구축하여 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선감학원의 기억되고 보전되어 할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기만의 생태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는 대부·선감도 지역은 이러한 경기만 에코뮤지엄 최적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과거 선감학원 관사와 원생숙소, 창고, 마을길과 경관 등 과거 그 마을의 형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민들과 함께 ‘선감학원 에코뮤지엄 평화마을’로 복원 재생해 나가는 대부·선감도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기창작센터 등에 조성된 선감학원 역사박물관과 쉼터 등을 활용하여 선착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감학원 마을 옛길 로드 등을 매개로 문화예술 사업 등을 통한 지역재생 및 관광 자원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선감학원 마을 전체에 대한 평화마을 조성 에코뮤지엄 계획 수립과 공공 토지매입 및 주민 수용대책 등 거점별 숙원 과제 해결, 신규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문화, 역사, 생태, 관광, 해양 등) 전문가, NGO,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경기만 에코뮤지엄 선감도 평화마을 포럼’을 조직하여 지역문제 논의 및 실행공동체 조직해 나간다.

선감도 해양에 조성된 해솔길, 선감도 어촌체험마을, 경기창작센터등과 선감학원의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명, 인권, 예술을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선감도 마을을 중심으로 환경(에코투어리즘), 예술(아트투어리즘), 역사(다크 투어리즘)이 접목된 명품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선감학원 에코뮤지엄 활동의 핵심이다.

선감도 해솔길 등과 연계하여 선착장부터 경기창작센터까지 실제 선감학원생들이 입도하여 선감학원에 들어갔던 길 약 2km를 역사 탐방 길로 조성하고, 해설자를 배치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한다. 경기창작센터와 선감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 및 생태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을 지향한다.

-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시기별 사업 내용
 - ~ 2016년 : 각종 자원의 조사·연구 및 마스터플랜 수립
 - ~ 2018년 : 에코뮤지엄 콜렉션 보존 및 재생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및 관광자원화
 - 에코투어리즘 코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19년~ : 경기만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조성, 경기만 에코뮤지엄 마을 조성, 경기만 에코뮤지엄 비엔날레 개최 등

[표] 경기만 에코뮤지엄 선감도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	대상자원	내용
경기만 에코뮤지엄 콜렉션	선감도 선착장, 창고	유휴시설재생, 선감도 방문센터활용
역사·환경·예술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창작센터(구 선감학원건물)	경기창작센터를 경기만 에코뮤지엄 교육센터로 육성, 프로그램 개발
경기만 선감도 에코뮤지엄 평화마을 조성	경기창작센터를 포함한 구 선감학원 마을 전체(콜렉션 및 트레일 통합)	경기만 선감역사평화박물관, 선감학원마을 역사문화탐방, 경기만 에코로드길 조성 등

3.5. (가칭) ‘경기만 선감평화 재단 설립’ 및 ‘역사평화박물관’ 운영

민간, 공공, 피해자, 주민, 전문가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진상조사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칭) 경기만 선감평화재단 설립’ 운영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서해 역사 환경의 기억과 보전, 예술문화 활동 등을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경기만 역사평화 박물관’을 설립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

‘선감평화재단 설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발형 협력 플랫폼 구축하여 진실회복을 위한 민간 및 공동협의체 구축 운영해 나가며 생명·평화·인권의식 고취시키는 경기만 선감 평화 포럼 개최, 주민 참여를 통한 생명·평화·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아울러 ‘경기만 역사평화 박물관’ 등을 통해 경기서해 연안 역사와 환경의 보전, 이 지역의 예술문화 활동을 진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추진체계는 기존의 공공중심의 조직을 지역시민단체, 피해자, 주민을 포함하여 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을 자문단으로 선정하여 대단의 대표성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한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피해자 단체의 운영진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공공에서는 경기도와 안산시의 집행부와 함께 시도의 원을 참여시켜 민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재단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 ‘선감평화재단 및 경기만 역사박물관’ 의 주요사업 내용
 - 관련 기록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
 - ; 선감학원 관련 정보DB구축
 - ; 평화포럼 기획 및 총괄운영, 평화포럼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경기만 선감평화포럼 개최 운영
 - ; 평화포럼 개최, 지역주민참여
 - ; 생명평화축제 개최
 - 선감도 및 경기만 평화마을 만들기
 - ; 생명·평화·인권을 주세로 스토리텔링 개발 및 브랜드 구축
 -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 ;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등
 - 피해자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 연안생태보전
 - ; 피해자접수, 쉼터 등 피해자 종합적인 지원방안
 - ; 주민복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연안생태보전 활동
 - ; 추모관련사업 추진 등



- : 경기서해 연안 생태환경 통합 관리 운영 등
- 경기만 역사보전 및 지역예술문화 진흥 등
 - : 경기만 대부·선감도 역사기억 보전 및 연구개발
 - : 경기만 에코뮤지엄 및 연안예술문화 거점 기관 마련
 - : 경기서해 지역 예술문화운동 진흥



발제 3.

선감학원 사건의 해결방안

여 준 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선감학원 사건 이후 부랑인 정책과 지속된 국가폭력

여준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선감학원이 왜 폐쇄됐습니까?”
 “도망가다 죽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원이 폐쇄 됐어요.”

“많이 죽었나요?”
 “직원들이 스물 몇 명이나 있었지만 부랑아들이 300명이나 수용되어 있어 다 지킬 수 없었지요. 어느 틈에 도망을 가 바다를 건너다가 많이 죽었어요. 주로 마산포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보면 건너편에 육지 화성군이 보여요. 거기서 물이 빠지면 건너다가 힘이 모자라 죽고 그랬어요.”

“왜 한스코 원생들이 탈출하려 했습니까?”
 “개네 들은 가출해서 나쁜 짓을 하던 애들이니까 남 속이고 도둑질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짓을 못하고 갇혀있다 보니 답답해서 그랬을 거예요.”

“혹시 구타나 강제노역 같은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했죠. 규칙을 어겼을 때는 사정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말도 못하게 싸워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어요.”

“남편께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셨죠?”
 “힘들기만 해요. 이가 들끓어 피부병이 안 걸릴 때가 없었을 지경이었어요4)...”

위 이야기를 보면, 1982년 선감학원 폐쇄 10여년이 지났지만 선감도 주민은 ‘부랑아’에 대해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 ‘누군가를 속이는 아이들’ 그래서 ‘갇혀도 당연한 아이들’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그곳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부 규율과 규칙은 필수조건이었고, 이를 어겼을 때 가해지는 폭력은 어쩔 수 없거나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이들의 수가 300여명이 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잡혀들어 온 아이들이기에, 통제 방식은 감금이거나 징벌, 위계에 의한 폭력적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탈출하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1980년 12월, 직접 운영을 하던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위탁 운영규칙」을 공포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위탁 운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감학원이란 실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직접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민간에게 위탁해

4) 이태곤, “선감도, 노역과 굶주림의 기억을 찾아서”, 월간 함께걸음(1991년 7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계속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수월치 않자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선감학원이 폐쇄되고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서 기자는 물었다. “선감학원을 관리, 운영하던 분들도 힘드셨겠네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질문이라 여겼는지 마을 주민은 대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바로 그 자리에 선감학원 피해생존자가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 격리와 배제를 당한 사람들이다. 40여년이 지나도록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피해자이지만, 왠지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잡혀갔을 거라는 죄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아니 못했고, 그래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제 그들이 묻고 있다.

“도대체 왜 나를 그 섬, 선감학원에 잡아 가두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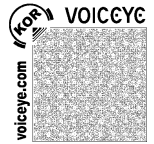
이렇게 묻는 이들이 비단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 뿐일까.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수용 시설에 갇혀 삶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국가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1) 한국 사회 대표적인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① 부랑인 수용시설의 존재 근거, 「내무부훈령 410호」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아나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 장애인, 이주 도시 빈민들, 남편 잃은 여성들이 거리에 넘쳐 났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몸 하나 누울 곳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했다. 국가는 이들을 ‘부랑인’이라고 정의했다.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보호와 자립갱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집단 수용이었다. 뒤늦게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두 법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한 시설 수용을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수용의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⁵⁾ 1964년 10월 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남대문 일대 이들 부랑인 736명 중 350명이 ‘부랑인’이었고, 1964년 동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부랑인에 대한 ‘가두정비’를 시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가두정비’란 말을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리를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외지고 고립된 시설로 몰아넣는 것은 정당한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5)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4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받은 수용시설은 대부분 민간 사회사업이나 해외원조단체(외원단체)에 의지해 자생적으로 확충되었다. 이후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국가는 법인 설립과 시설 설치 등의 국가규제와 예산지원 등 관리감독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해 부랑인 단속, 수용은 ‘부랑인 선도사업’이란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을 결코 명문화하지 않았다. 입소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했으며, 사회복지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재소기간은 6개월이었고, 1회 더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강제수용이었다.⁶⁾

이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복지정책은 수용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단지 훈령이나 국가 통치권자의 별도 조치나 명령에 따른 단속과 수용이 정책 기조로 지속될 뿐이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처리」(이하 훈령)이 대표적인 예다. 훈령에서는 부랑인을 단속·수용·보호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임무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윤리적 측면에서 모든 부랑인을 친부모 형제와 자식과 같이 대해야 하고,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범법자, 불순분자 등의 활동을 봉쇄하며⁷⁾,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불우이웃을 도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처리지침 1)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제단속과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하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훈령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국가의 중대한 업무 수행이라 판단한 부랑인 단속을 위해 내무부가 정한 업무 지침일 뿐이다. 범죄인도 아닌데 ‘부랑인’이란 허구의 개념을 생산해 낙인찍었고, 경찰과 공무원이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없이 체포·구금·노동·폭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묵인한 것은 반인권적이며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⁸⁾

그런데 이 훈령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인물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이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⁹⁾으로 출발했지만 71년 보육시설에서 부랑인시설로 변경하였다. 75년 7월, 부랑(아)인 일시보호 사업을 위해 부산시와 위탁 계약 했고, 그해 12월 15일 제정된 「내무부훈령 410호」

6)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4

7)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2010년 펴낸 자서전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총 14권)’를 통해, “자신이 군인 신분으로 경찰서 파견근무를 나갔을 때, 부랑인으로 위장해 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조총련계 간첩들이 있으니 수상한 사람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공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부랑(아)인 수용소 운영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8) 조영선, 이아,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대한 위험성 검토] ‘형제복지원은 위험인가’, 2015.10 민주변론

9) 박인근의 장모가 운영하던 것을 이어받아 부랑(아)인 일시보호소로 변경, 운영을 지속하였다.

의 근거에 따라 본격적인 부랑(아)인 단속 및 수용, 확장하기에 이른다. 이후 1981년 전두환이 총리에게 내린 서신¹⁰⁾은 법보다 통치권자의 한 마디가 더 위력을 갖는 당시 시대상을 말해준다. 81년 4월,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다. 그러자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명분으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연인원 공무원 1만 명을 투입할 정도로 부랑인 단속은 보다 강화된다.¹¹⁾ 1986년 말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36개 부랑인 수용시설에는 약 1만 6천 여 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²⁾ 이는 81년 8,605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② 정권의 비호로 살아남은 형제복지원 사건

1986년 12월, 울산지청 소속 김용원 검사는 우연한 기회에 산속에서 강제노역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모든 신문의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수사결과 강제노역은 물론 비리, 국가보조금 횡령, 폭력과 성폭력, 정신과 약물의 과다투약, 납치와 인신매매에 가까운 입소과정이 밝혀졌고, 이 내용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사는 울주군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한 100여명의 수용인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3,000여명 이상이 수용된 형제복지원 본원을 조사하고자 했을 때, “수사를 그만 하라”고 부산시, 법무부, 청와대, 안기부 등에서 외압이 들어왔기 때문이다.¹³⁾ 결국 서둘러 수사를 중단하고 87년 1월 17일, 특수감금, 초치법, 건축법(초지에 대한 무허가 건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을 구속하였다. 박인근 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석방하라는 정권의 직간접적인 외압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김주호 부산시장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¹⁴⁾ 전두환은 감옥에 있는 박인근의 공로를 치켜세우

10) 총리 귀하, “근간 신체장애자 구결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정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전두환

11) 경향신문(1981.10.29.자) “부랑인등 154명 단속”; 매일경제(1981.11.21.자) “보사부, 도시의 부랑인이 없어진다.”

12) 연도별 입·퇴원 및 잔류 인원

※ 형제복지원 행정관리지원단, 자료(87.3.27)

(단위:명)

구분	75	76	77	78	79	80	계
입원	1,448	2,544	3,005	3,428	3,638	1,785	
퇴원	1,446	2,547	2,995	3,421	3,619	1,764	
잔류	2	6(-3)	10	6(7)	16(19)	19(21)	
구분	81	82	83	84	85	86	계
입원	3,115	2,997	4,019	4,355	3,948	3,975	
퇴원	3,037	2,877	3,760	3,898	3,347	2,385	
잔류	78	120	259	457	601	1,590	
							37,267(38,257)
							34,103(35,096)
							3,164(3,161)

※ () 앞의 수치는 보고서의 수치이며, () 안의 수치는 재계산 결과 수치임

13) 김용원, 1. 형제복지원, 브레이크 없는 벤츠, 1993, 예원출판사

14) 제133회국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1987. 5. 9.)에서 무소속 이용택의원이 정호용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했으나, 부산시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일보 이용우기자가 쓴 책 [삼성년] 한 챕터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의하면,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부산시장에게 추궁하니, 보사국장 전경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록되

기도 했다.¹⁵⁾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문을 걸어 잠근 상황에 대해서도 ‘특수감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유례없는 7번의 재판 끝에 ‘혐의없음’판결을 받고, 198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2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형제복지원은 임금 받는 직원이 거의 없었다. 수용인들에게 중대장, 소대장, 조장, 소지 등 계급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박인근이 구속된 후 더 이상 자체적인 군대식의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박인근이 구속된 후에도 폭력으로 1명의 수용인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보사부, 내무부, 부산시, 안기부, 치안본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책반¹⁶⁾은 결국 나가고자 하는 수용인들을 퇴소 조치하고, 아이들은 소년의 집 등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하지만 끝까지 A,B,C 세 병동에 있던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끝까지 볼모로 남겨졌다.¹⁷⁾ 가장 약한 사람들만 남겨진 것이다. 게다가 박인근 구속 후 관계 공무원들로 이사진을 구성, 직접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근 체제가 아니었고 형제복지원은 여전히 박인근의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따라서 강제입소는 지속되었다.¹⁸⁾ 1988년 1월 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단속돼 끌려온 사람이 계속 있었고, 관리가 되지 않아 결국 보사부가 143명의 수용인 중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4명을 제외한 139명을 타시설로 전원조치 하라고 부산시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며칠 후, 1월 19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전원조치 중 27명이 집단 탈출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후에 관선이사 체제가 되긴 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박인근 원장은 출소 후 법인 이름을 바꾼 후 다시 이사장에 복귀, 지인과 친인척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후 2011년 아들에게 이사장직을 넘겨 2015년까지 운영했다. 아들 박천광은 목적사업인 중증장애인생활시설 하나를 운영하면서 헬스장, 온천 등 수익사업체는 4개를 운영했다. 대를 물려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 118억에 이르는 불법대출(부산시 사후 승인)을 받았고 이를 갚지 못했다. 부산시는 뒤늦은 감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을

어 있다.

- 15) 박인근 원장이 부산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전두환 대통령은 전국체전을 이유로 부산을 방문했다. 월간조선 2013년 12월호 “단독입수 : 전두환 정권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장이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하자 “복지원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느냐”라는 말을 대통령 수행 공무원으로부터 수사검사가 전해 들었다고 적고 있다.
- 16)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회의 문건에는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부랑인 수용시설 원장의 비리 문제로 터진 수습 대책회의에 왜 안기부가 포함됐으며, [대외비]란 비밀문서로 간주된 이유는 ‘형제복지원’이 단순한 부랑인 시설이 아닌 안보차원의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 17) 1987년 5월 8일 12대 국회, 제 133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일민주당 강삼재의원은 대책마련에 대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신병동이라 불리는 정신요양원에 입소된 수용인들이었다. 하지만 경향신문 87. 6. 22일자에 따르면, 모두 전원조치 되고 단 36명만 남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 18) 박인근 구치소 면회 기록에 따르면, 계속 입소시키고 단속을 강화해 탈출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하고 있다.

징계¹⁹⁾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박인근은 당시 '치매'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고, 2014년 박천광 이사장은 징역 3년의 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부산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새 이사장 서00씨가 처분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2016년 1월 대법원은 부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드디어 한국 사회 대표적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513명이 사망하고, 온갖 착취와 인권침해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도 원장 박인근과 폭행에 가담한 몇 사람만 구속됐을 뿐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달라진 게 없었다. 그 후에도 가장 약한 발달, 중증장애인들을 볼모로 2016년 초까지 '실로암의 집'이라는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지속해왔으니 말이다. 그동안 자유를 찾은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곳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수십 년이 흘렀어도 지속되고 있다. '부랑인'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은 수용인의 입장에서, 피해생존자, 유가족의 목소리로 쓰여져야 한다. 참혹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기록과 정리가 남았고, 국가에겐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과 책임 등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만 남았다.

③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수용시설 정책의 변화

그렇다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을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던 중, 2월 7일 대전 성지원²⁰⁾(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이사장 노재중)에서 38명의 원생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민당은 형제복지원 진상조사단²¹⁾처럼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을 조사할 계획으로 성지원부터 찾아갔다. 하지만 대전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²²⁾ 현장 조사에서는 노재중 이사장과 수용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성지원 정문을 굳게 잠근 채 온갖 욕설과 폭행을 휘둘러 조사는커녕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흘러 정보과장이 경찰 병력을 대동했으나, 그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철수하는 게 좋겠다"며 오히려 신민당 조사단인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²³⁾ 결국 성지원 안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한 채 더 이상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자료를 통한 중간조사보고서만 작성한 채 마무리했다.

19) 2012년 당시 부산시는 "시설장이 치매로 병원 입원 중이라 확인할 바가 없어"라는 이유로, 경징계 2명, 훈계 7명, 주의 7명으로 형제복지원 비리사건을 덮어버렸다.

20) 1998년 강제노역 및 감금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양지마을과 같은 법인이다.

21) 신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자료와 수용인 조사를 통해 1차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해와 부산시의 비협조로 2차, 3차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끝났다.

22) 신민당조사단이 부산시장 면담을 하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정호용 내무부장관이 부산시장에게 "일개 야당에서 부른다고 가냐!"고 호통을 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23) 신민당전국복지원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신민당 전국복지원조사단,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소장 자료, 1987. 2

이 중간보고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각종 비리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설치기준, 인원 수, 전문 직원, 근로조건, 만료기간 명시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불량인 수용시설의 운영 실태와 그 안에서의 인권침해 등 실상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7년 3월 19일「내무부 훈령 410호」를 폐지했다. 내무부가 불량인 수용시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한 건 없었다. 정부는 불량인 단속 및 수용에 관한 업무의 주무부처를 내무부에서 보사부로 바꿨을 뿐이다. 같은 해 5월 4일 보사부훈령 523호(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가 즉시 발령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무부훈령 410호와 다른 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명시한 후, 입소자 복지 등을 언급했을 뿐,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와 경찰에 의한 ‘강제입소’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성지원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불량인 수용시설 운영 책임부처와 목적, 관리감독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다. 무소속 이용택 의원은 당시 정호용 내무부 장관에게 “부랑인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어느 부처 소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호용 장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내가 새로 부임한 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무부훈령 401호를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불량인 수용 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사부 소관이 맞고, 내무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²⁴⁾

내무부훈령 410호가 폐지되고 곧바로 보사부훈령 523호가 발령됨으로써, 정부에 따져 물을 책임 소관부처가 애매해졌고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문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때마침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후, 5월 노동자 대투쟁과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 시민항쟁이 이어지면서, 불량인 수용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과 국가책임에 대한 규명은 흐지부지 사람들의 기억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2) 90년대 이후 불량인 수용시설의 변화와 정책

① ‘부랑인’이란 용어의 퇴출

이후 정부는 1990년대부터는 부랑인복지시설의 법적위치 및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훈령에서 부령으로 마련하였다.²⁵⁾ 또 2000년에는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2003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24) 제133회 국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중, 이용택(무소속)의원 질의에 대한 정호용 내무부 장관의 답변 중에서, 1987. 5. 9.

25)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4

령으로 제정해²⁶⁾, 부랑인과 노숙인의 개념 정의를 달리해 시설 수용과 쉼터 등의 일시적인 거처 개념의 복지서비스 부분을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다.²⁷⁾

2011년에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2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함께 사용한 부랑인과 노숙인의 용어를 ‘노숙인’으로 통일하였다. 이 법률 부칙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란 표현을 ‘노숙인 등’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부랑인’이란 용어가 삭제된 것이다.

용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나, 사회통념상 부랑인은 결인과 정신질환자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²⁸⁾ 이 때문에 부랑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87년 형제복지원과 성지원 사건, 그 후 98년 IMF 경제위기 등으로 ‘부랑인 수용시설’은 쇠퇴기에 접어든다. ‘노숙인’ 용어로의 통일, 지역사회 중심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에 따라 그 수와 수용인원이 꾸준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랑인’이란 용어는 법률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용어가 되었다.

이제 ‘부랑인’이란 용어는 수용시설의 참혹했던 인권침해의 실제적 진실규명만을 남겨놓은 우리 사회 과제일 뿐이다.

②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그리고 또 다른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들

수용 시설에 간혀 희생당한 피해자들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납치와 감금에 대한 불안에서는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장애와 가난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혹은 종교단체로부터 수용시설에 입소를 강요당해 시설에 간혀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며, 그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이다. 자발적 입소가 아닌 강제 입소일 경우, 퇴소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주변의 권유로 입소해 지금까지 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 또한 강제입소와 비슷한 경우는 아닐까? 국가의 지원을 받던 부랑인 수용시설의 수가 줄고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수용시설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 말 기준으로 부랑인 수용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의 4명 중 1명만이 비장애인이고, 나머지 3명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60%는 정신질환이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http://www.law.go.kr>

27) 1997년 IMF 이후 실적 상태에 놓인 노숙인이 증가하자 정부는 더 이상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부랑인’이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부랑인’과 ‘노숙인’은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노숙인’으로 보았고, 때문에 잠시 잠잘 곳인 ‘쉼터’와 자립을 위한 ‘상담소’설치 등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을 지원하던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28) 김욱(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집필, 노숙인 개념 정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2011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4년 뒤인 1992년 말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아도 10중 중 약 2명 (17.4%, 13,202명 중 2,303명)만 비장애인이고, 나머지 8명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55%는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수용현황을 보면 당시의 불량인 수용시설이 결국 보호자 없는 장애인이나 아동(1988년 당시 18세 미만 아동은 불량인 수용시설 수용자의 26%를 차지하였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때문에 불량인이란 용어가 법률에서 삭제되고 불량인 수용시설이 과거처럼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어 지역사회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그 많은 수용시설에 갇혔던 사람들 즉,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전원초치라는 이름으로 타 시설에 갇혔거나 다시 붙잡혀 들어와 여전히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국가가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14년 국회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에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적이 있는 거주인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입수했다. 30여 년 째 갇혀 있는 수용인 수가 무려 270여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국 시설의 전체 조사가 아니었다. 복지부가 각 광역 지자체로, 다시 기초 자치단체로, 또 다시 각 시설로 보내 취합한 자료인데, 지자체 의지에 따라, 혹은 시설 의지에 따라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성격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8만 여명이나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은 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만일 제대로 된 조사를 한다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복지원 단 한 곳에 수용되었던 수가 이 정도니, 당시 전국 36개소 1만 6천명에 달하는 수용인들의 현재 삶은 어디서 어떻게 지속되는지 알 길이 없다. 아마 형제복지원 수용인의 현재를 시설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수는 어머 어마 할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³⁰⁾ 제2, 제3의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랑인’의 다수를 차지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나 지적, 발달장애인이자면, 우리는 범위를 더 확대해 현재의 중증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까지도 ‘제2, 제3의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들’ 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현재 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③ 수용시설의 또 다른 이름, 미신고시설

1984년 보사부의 정신질환 종합대책은 무허가 시설 양성화의 시작이었다. 1985년 정신보건법을

29)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4

30) 이 통계치는 모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소경위(타 시설 전원)를 역추적하면 파악할 수 있다.

정부안으로 발의했으나, 1986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렇지만 ‘규칙’의 형태로 정신요양시설의 국가 지원은 지속되어 1985년 47개에서 1990년에는 74개로 늘어났다. 부랑인 수용시설의 감소와 쇠퇴는 정신요양시설의 확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복지가 목적이었지만 역시나 가족과 지자체장,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 등으로 병원과 요양원에 강제입원(입소)을 합법화했고, 강제수용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 즉 무허가-미신고시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기도원 등 종교 공동체, 생활공동체의 이름을 내세워, 실은 수용시설의 형태로 운영하던 곳들이 2002년 당시 1천여 개에 달했다. 물리적, 정서적 폐쇄성이 강해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다. 직원은 가족이나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용인들은 약 10배에 해당한다. 하루 일과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나고 8시에 전체 소등을 한다. 휠체어 하나 없어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았고,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기저귀로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은 구경조차 한 적이 없으며, 음식은 대부분 푸드뱅크 등을 이용한다. 일상 자체가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³¹⁾

이런 시설 수용인의 인권과 안전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수용시설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³²⁾ 읍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고 폐쇄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지만, 국가는 그럴 의지가 없었다. 수용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분히 운영자와 관리, 감독의 입장에서 시설유지정책을 고수했다.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자발적 신고는 많지 않았다. 개별 시설들은 그럴 능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용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초수급비가 입소비로 시설장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갔기 때문에 괜히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가며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탓이었다. 급기야 2002년 충남의 어느 장애인 미신고 수용시설에서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자, 복지부는 특단의 조치라며 ‘조건부 미신고 양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2002년 시작해 2005년까지로 기한을 두었으나, 성과가 없자 2007년, 다시 2009년까지 계속 시설 운영의 제도권 진입 장벽들을 낮추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신고 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처음엔 시설 정비 기준 완화로, 두 번째는 운영자 자격 기준 완화, 세 번째는 종사자 자격 요건을 낮춰 법인 등록을 유도했다.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유행이었던 로또로 인해 복권기금 849억, 삼성재단 기부금 약 450억 원 등 약 1천 3백억

31) 여준민, ‘미신고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0, 10,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32) 인권침해 해결을 명분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다.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벽돌 건물로 시설의 겉모습은 ‘집’의 꼴을 갖춰갔다.

이 시설들이 개인운영신고시설로 혹은 법인 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이 약 15년 정도 추진되었다. 여전히 미신고시설로 남아 있으려는 시설은 불법으로 간주돼 발견 즉시 폐쇄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운동을 통해 본 선감학원 사건 해결방안

① 형제복지원 사건을 현재로 끌어올린 사람들 - 피해생존자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가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와 감금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다. 두 사건 모두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만의 책임일까? 실은 가난한 이웃들을 배제해 온 우리 사회 민낯이 만들어낸 슬픈 역사임과 동시에 함께 풀어가야 할 의제는 아닐까.

“‘최소’ 513명의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한중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면서 묻힌 과거를 현재의 화두로 밀어 올렸다. 9살 소년이 마흔 즈음의 장년이 되어 뼈곡히 써내려간 그곳의 진실은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졌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의 설립과 함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운동으로 접화됐다.”³³⁾

처음 시작은 이랬다. 한중선이라는 피해생존자가 허리를 다쳐 일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갔다. 소득 조사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버지와 누나의 행방이 나타났다. 26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일가족이 모두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었지만, 87년 사건 당시 한중선은 홀로 부산의 소년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 소년의 집으로, 갯생원으로, 다시 소년의 집으로 여러 차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원조치 되어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온 것이다.

자기 삶의 비루함은 차치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의 모습에서 처절한 분노를 느꼈다. “왜, 형제복지원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라고 외쳐야 했다. 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지만 들어주는 사람, 그곳에서의 실상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1인 시위뿐이었다. 국회 앞에서 24시간 노숙을 하며 그렇게 홀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라고, 우리 사회에 말을 건 것이다.

33) 유해정, ‘형제복지원, 그곳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의 문예』, 2018. 2

이에 화답한 사람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규찬 교수다. 우연히 국회 앞을 지나다 피켓을 보고 궁금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기억을 끌어올려 너의 언어로 기록해라”는 게 그의 조언이었다. 한중선에게 처음으로 말 걸기를 시작한 사람이다. 아니 한중선의 말 걸기에 가장 먼저 진지하게 응답한 사람이다. 몇 개월에 걸친 그들의 만남 결과물이 바로 [살아남은 아이-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이다.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³⁴⁾은 이 책이 계기가 되었다³⁵⁾. [살아남은 아이]는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편이 전규찬 교수가 쓴 형제복지원 수용 시설의 구조와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분석 글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폭력’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주범일 수 있는 ‘배제와 감금의 역사’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② 과거 수용시설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과정 - 형제복지원진상규명 운동을 중심으로

가. 당사자 모임 조직과 연대

·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했을 당시, 대책위와 연락이 닿는 피해생존자는 4~5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 많은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언론이 유효했다. 보도가 되면 그때마다 기사나 방송을 접한 피해생존자들이 스스로 연락을 취해왔다. 역으로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취재가 가능한 내용을 생산해야 했다. 2018년 현재 연락이 닿는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은 약 300여명이고, 피해생존자모임이 별도로 조직돼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 국회 앞 노숙농성, 연극 시나리오 집필,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SNS 홍보활동 등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나. 숨은 자료 찾기

· 대책위는 자료부터 찾아내 분석했다. 부산시, 기장군, 보건복지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자료를 찾았고, 관련 논문 검색, 신문검색, 영상 검색 등으로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김용원 당시 검사의 수사기록 일체를 전달받았고, 2010년 박인근원장이 펴낸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14권(화보집 포함)도 다큐 감독인 전상진 씨로부터 받았는데, 형제복지원의 운영실태

34) 처음엔 탈시설정책위원회, 민변, 민주법연, 49통일평화재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으로 출발했지만, 2013년 3월, 22개 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참여단체: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청년한의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홀리스행동

35)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 강용주 소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숫자가 된 사람들’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의 출발은 생존자들 스스로의 목소리다. 말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에 머물지 않고 치유의 시작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들어주는 사람들’의 존재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들어주는 일, 생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 진실과 정의를 향해 더불어 한 걸음 걷는 일일 것이다.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와 당시 상황과 배경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진선미, 김용익 두 의원과 함께 형제복지지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의 집을 방문해 찾아낸 당시 자체 소식지인 '새마음지'와 1993년 김용원 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며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를 입수한 것 또한 큰 성과였다.

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의 해석 시도

- 연극, 출판, 영화, 사진 및 그림 전시, 모의 국민법정,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각각의 형식에 맞게 재구성해 알려냈다. 당시의 사건을 상상하고 현실로 마주하게 하는 힘을 발휘했다.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외연을 확대했다.

라. 특별법 제정 운동

- 2014년 19대 국회 때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단 한 차례 안행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다. 2017년 20대 국회 시작 후 또다시 진선미의원등 약 70여명이 곧바로 발의했으나,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기본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개별사건이지 않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지만 큰 틀에서의 과거사로 접근하는 것 또한 의미 있어, 생존자모임과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이거나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이거나 둘 중 하나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 사회적 의제 형성

- 각종 기자회견, 학술대회, 토론회, 증언대회, 자료공개 및 발표회, 학회 및 학술지 발표, 각종 논문 생산, 언론 및 각종 기고 활동 등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나갔다. 관련 전문가와 학자의 글쓰기와 연구도 매우 유효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수용시설의 문제와 배제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다.

바. 피해생존자들의 주체적 활동

- 피해생존자모임은 적절한 식발식, 주연이 된 연극 발표,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 기자회견에서의 호소문 발표,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손편지 쓰기, 증언대회, 국회 방문,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와 대구 희망원 사건 대책위 등과의 연대, 국토대장정, SNS 활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고 또 하고 있다. 피해생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활동이 필요할 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소통한다. 평소엔 생업에 충실하고 있다.

사. 기타 - 해외 언론 보도 등

- 행정자치부 차관 면담, 국회 부의장 면담 등을 진행했고, AP통신, 미국 CNN, 일본 주니치 신문, 영국, 태국 신문 보도 등이 있었고, 검찰 과거사위에 진정한 기자회견 내용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까지 보도가 되었다.
아시아인권법률지원센터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정부의 진상규명 책임을 묻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③ 진상규명 첫 출발, 법적 근거 마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대책위와 피해생존자모임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알 수 있듯 민간단체로서는 그리고 피해생존자인 당사자조직으로서는 할 일을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법안 발의 후 19대 국회 3년 내내 상임위 공청회 외 단 한걸음의 진전도 보이지 못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 기조였던 탓이 크다. ‘과거사’는 덮어야 하는 문제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2014년 당시 안행부 자치행정과장은 “현 정부에서 과거사를 다룰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³⁶⁾ 또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단 하나의 인권침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 2000년대 중반에 발족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야 했다. 사건마다 별도로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 한국 전쟁 이후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며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³⁷⁾

19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별사건이고,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문제였으며, 국가책임을 어떻게 단정하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급기야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애매한 말을 하며,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여, 야가 공청회 일정을 합의해 2015년 7월 5일 안행위 상임위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 날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는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강점 시기부터 6·25, 민주화 등을 거쳐 오는 동안 과거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입어왔다.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대일항쟁기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개별 사건별로 일일

36) 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가 직접 통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내부 자료

37) AP통신(김동형 기자), ‘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 2016. 4.20



이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있는 법령 및 복지정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건들 중 형제복지원에 한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므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³⁸⁾

지금도 확인 가능한 일이지만 구글 검색에 형제복지원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2012년 몇 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 5월 현재 21만 8천여 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올라올 정도다. 불과 3년 전이라 치더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후 여론이 확연히 달라졌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달라졌을까. 20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더 혼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과거사 청산’이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인 여당이 속도를 낼수록 자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논의를 지연시켰다.

2017년 1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하지만 행자부 차관은 비용 문제를 들며 기재부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여당 의원으로부터 “기재부 차관인지 행자부 차관인지 헷갈린다” 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은 예산과 선감학원 등의 개별사건은 어떻게 풀 것이냐는 등의 논의들이 나오자 “큰 틀의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논의할 때 계속 심사키로 하자”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³⁹⁾ 과거사정리기본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진선미, 추혜선, 소병훈, 권은희 네 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모두 조금씩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 후 상임위 의원이 모두 새롭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논의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의 첫 번째 단계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과거 수용시설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과 이를 통해 조사를 담당할 책임 있는 정부 기구의 설치, 운영이다.

“나를 왜 잡아가두었습니까?”라고 3~40년을 숨죽이고 이제사 애타게 힘겹게 질문하는 피해생존자들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

38) 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의 공청회 현장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공청회를 방청하던 피해생존자들 사이에서는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39) 2017년 1월 10일 20대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참조

〈지 정 토 론〉

- 사회 :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 차성이 (수원스마일센터 부센터장)
-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과제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1.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 해결 관련 노력과 제한

가. 선감학원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자치법규 제정

경기도는 2016년 2월 24일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와 위령사업을 위한 자치법규로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한 차례의 개정으로 통해 현재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한다.

본 조례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유해 발굴, 유적지 정비, 위령제 봉행, 문화·학술 사업, 추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지원 및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피해지원
2. 희생자 유해 발굴
3.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관리 사업
4.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5. 선감학원 사건 및 유적지 순례 사업
6. 선감학원 관련 문화·학술·기념 사업
7. 선감학원 사건 추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경기도는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2016년 2월 24일 구성하여 10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현장방문 및 학술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밖에 특별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특별위원회는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감학원 관련 피해자의 면담, 경기도 차원에서의 관련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경기도의 피해자 관련 사업

경기도 시흥에 있는 에코뮤지엄은 문화유산을 테마별로 연결하여 환경·역사·문화자원의 파괴 및 공동체해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박물관으로서 지역의 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전문가와 NGO,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해 지역 문제 논의와 실행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에코뮤지엄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보존 및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이는 선감도의 유희시설 재생, 선감도 방문 센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구 선감학원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경기창작센터를 통해 체험 교육센터로 육성하여 선감학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사업과 관련된 3조의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먼저 선감역사박물관을 운영하여 선감학원 관련 동영상, 문헌을 제공하고 예술작품 등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선감학원 위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희생자 공식 위령제로서 매년 5월 28일부터 1박 22일간 진행하고 추모음악제, 역사탐방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총 90여기의 학원생 묘역관리가 이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이다.

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제한

경기도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감학원 원생의 입소경위 파악과 선감학원 운영 동안 사망원생이 어느 정도이었던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조사권한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사전조사를 하기 어렵기에 겪는 현상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은 특별법이 없기에 나타나는 권한의 한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선감학원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과제

가.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개념

선감학원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확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이 진행되었다.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국내의 유사 사건과 달리 1차 피해자들이 대부분 생존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나.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 필요

민간, 공공, 피해자, 주민, 전문가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진상조사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감학원재단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담고 있어야 하며, 진실회복을 위한 민간 및 공동 협의체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본다면 첫째, 선감학원 관련 정보 DB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기록 구축 및 홍보 사업이 필요하고, 둘째, 선감마을의 역사 바로 알기 사업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하는 평화마을 만들기 운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 파악과 지원방안 수립, 관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추모사업 실시를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

선감학원 1차 피해자인 원생 출신 피해자들은 선감학원에서 나온 후 30~50 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정식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데, 이는 특정 기관 및 센터를 통해 가능하지만 경기도가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및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당장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감도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지역발전,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생태적 가치와 함께 경기만의 평화·번영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감도를 피해자·주민·방문객이 함께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감학원 관련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선감학원 사건 추모공간을 조성하며, 선감학원 원생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 특별법 제정 추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대부분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제정은 관련 추모사업, 조직 운영, 시설 설립 등에 법적 근거를 보장 받는 것 이외에 해당 사건의 국가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선감학원 사건은 그 당시 관할하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개념이 부족한 시기에서의 사건으로서 경기도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역시도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지역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필요하다.

국내 유사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민간단체 위주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와 안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입법화 추진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견고한 조직화를 바탕으로 국회에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어

앞서 선감학원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앞으로의 과제의 방향성을 다시 정리하자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버넌스 조직필요, 추모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은 경기도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기에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관련 당사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건 해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 ● ● ●

총체적 인권유린사건 :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국가기록원은 형제복지원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박인근은 매년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한편, 원생들을 무상으로 노역시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막대한 금액을 착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으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9월 14일에 2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이 정도면 형제복지원사건을 사회적 주변인으로 상정된 부랑인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이며 반문명적인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형제복지원에 강제구금되었던 부랑인들은 누구인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다. 이 훈령에 의할 경우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接客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꺾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행하는 모든 부랑인”(규칙 제1장 제2절)이다. 심지어 이 훈령은 “노변행상, 빈 지게꾼, 성인꺾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을

준부랑인으로 규정하여 부랑인 대책에 준하여 단속 조치하였다(규칙 제1장 제3절 6호). 거리에서 외관상 아름답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단속과 강제구금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노동력 창출 위해 부랑인을 처벌했던 초기자본주의

사실 부랑인 문제는 자본주의 모순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노동력의 확보는 농민을 토지로부터 추방하고 무일푼의 프롤레타리아를 만듦으로써 이뤄진다. 그래서 영국에서 본격적인 부랑인법은 1349년 노동자법령(the Statute of Labourers)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1348년 흑사병은 노동력을 급감시키고 노동임금을 현저히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영주는 상승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농노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고, 농노는 더 나은 생활조건을 좇아 도망간다. 이러한 배경에서 1349년 노동자법령은 영주에게 자기의 농노와 소작인에게 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여 영구 상호간의 농노쟁탈전을 제한하고, 농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식과 유랑을 금지시키고 결인에게 자선을 하는 것도 처벌하였다. 15세기의 폭력적 토지수탈인 인클로저운동에 의해 추방된 사람들은 도시빈민을 형성하고 대규모 부랑자가 되었다.

첫 부랑인법인 헨리 8세 시대의 1530년 법률에 의하면, 노동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거나 부랑자이면 초범인 경우 태형과 감금형으로, 2범인 경우 태형에 처하고 귀를 절반 자르며, 3범인 경우 중죄인으로 또는 공동체의 적으로 사형된다. 이후 부랑인법은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여 가슴이나 이마에 낙인찍기, 부랑인신고자의 종신노예화 부랑인 자녀의 도제화 노예화, 재범으로 18세 이상으로 2년간 이들을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있어 사형, 3범인 경우는 반역죄로 사형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17세기 중엽 파리에 '부랑자 왕국'이 만들어지자 루이 16세는 칙령(1777년 7월 13일)으로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건강한 사람이 생활수단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 경우 갠리션을 짓는 형벌에 처했다. 미국의 부랑인법도 영국의 부랑인법을 이어갔다. 이 시대의 부랑죄의 법률적 특징은 부랑자는 범죄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류의 인간에 속하면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신분범죄'의 특징이 있다. 또한 임금노동의 제도에 필요한 규율에 익히도록 징벌을 가한 특징이 있다.

한국 부랑인 정책 변화

한국의 경우도 해방이후 ‘거지’라는 개념의 부랑자들이 한국전쟁과 함께 상이군경을 비롯한 ‘양아치’로 불리던 무리들이 1970년대에 부랑인 개념으로 변해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산업화와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는 수출전략을 펼쳤고, 농민의 이농을 부추겨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빈농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이주하였고, 이 중 아무리 일을 하려고 간청해도 일자리를 잡지 못한 유희노동력이 부랑인계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략하여 도시문제로 지목되고, 무허가판자촌의 철거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거의 불안정이 취업의 불안정과 함께 들이닥쳐 대규모의 부랑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정당하게 배려 받지 못하고 배제된 가장 비참한 레미제라블이 부랑인 또는 준부랑인들로 규정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부랑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정비 없이 보안처분으로 부랑인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했다.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취급하면서 단속과 강제수용, 정신교육과 징벌적 강제노동을 부과했다. 유신독재시대인 1975년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1975.12.15. 내무부훈령 제410호)의 제정은, 법령이 아니라 훈령이지만 국가가 경찰법 차원에서 부랑인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최초의 공식 문서이다. 물론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므로 강제수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전두환 정권은 ‘부랑인 복지시설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폐지하고, 관할부서도 보건사회부로 변경하였다. 새로 제정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보건사회부 훈령 523호.1987.4.6.)에서도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결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불구 폐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도 ‘부랑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훈령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하여 치안차원에서 처벌,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전두환 정권의 통치전략이 빚어낸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사건은 이와 같이 한국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을 배경으로 하여, 독일의 히틀러 시대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히틀러시대에도 부랑인을 반사회적 행위자로 규정하여 예방적 강제구금을 벌이는 노동기피왕국 작전(Aktion "Arbeitsscheu Reich")이 있었다. 즉, 당시 파행적인 정치권력의 반민주성·반민중성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은 사회불안을 이용하여 체제의 모순을 특히 가난한 미망인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빈곤층에게 돌리고 공동체에서 그들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이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권력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통치수단으로서, 적과 친구를 구별하거나 생성하고, 그 적을 박멸함으로써 권력의 안정성과 함께 정당성을 획득하는 전략을 필사적으로 구사한다. 적의 실체가 없으니 내키는 대로 조작하고 가공할 수 있다. 불법적 군사정부에서 부랑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반사회적인 '적'으로 항상 등장한다.

불법적 파시스트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도, 형님 독재자 박정희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흠결 있는 정치적 정당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우고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화와 사회악 일소를 내세웠다. 그 이름으로 삼청교육,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사회정화 국민운동, 학원정화사업인 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차례의 대통령훈령에서 볼 수 있듯이 무질서를 낳는 원인제공자로서 부랑인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사회격리의 통치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전후로 벌인 '거리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랑인에 대한 단속과 강제구금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부랑인에 대한 일체 단속과 강제구금의 결과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수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게 된다.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정책으로 부랑인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인간실격(人間失格)의 더러운 물건에 불과한 취급을 받으며 말끔히 청소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은 '권리를 가질 권리' 조차 없는 법적 무지위 상태 그 자체였다. 이 기간에 수용된 사람들이 거의 퇴소를 하지 못하고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도 이들은 형기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전두환이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내린 말이다. 이 평가 한 마디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 나아가 1987년 형제복지원사건이 세

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청와대, 내무부, 법무부, 보안사, 안기부, 검찰, 부산시장 등의 위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형제복지원사건은 불법적 군사정권이 정권보위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량적으로 자행한 ‘총체적 인권 침해’이다. 국가범죄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말한다.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이 국가범죄와 유사 내지 동일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제5공화국의 헌법에서도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함이 없이 오직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가조직에 의한 ‘단속체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대량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불법적인 강제구금사건이다. 내무부 훈령은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며 법률이 아니므로 부랑인의 강제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가범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기구나 국가의 후원을 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사기업이나 민간조직조차 국가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의 법적 지위나, 국가와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위탁의 법률관계상 국가는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자기책임으로 국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형제복지원사건은 정권이 은폐·축소하여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가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체제의 범죄이기도 하다.

국가폭력과 국가범죄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국민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묵인과 방조했던 우리들 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책임이 있다. 더구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가책임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은 2013년, 우리가 성찰하고 풀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복합 트라우마(Complex Trauma) 관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이해

차성이 (수원스마일센터 부센터장)

1. 정신적 외상(Trauma)에 대한 관점

- 정신적 외상(trauma; 이하,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 등의 노출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건을 의미한다.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된 이후 악몽, 플래시백(외상 사건이 마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경험하는 증상), 불안 및 과각성 증가 등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이 1달 이상 지속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의 기능이 억제된다. 해마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외상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하게 되는 플래시백(flashback) 증상을 설명해준다.
- 모든 외상 사건의 생존자가 PTSD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상 사건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수록, 통제 가능성이 낮을수록,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서적 손상 강도가 높을수록,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PTSD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2.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

- PTSD의 진단기준(DSM-V)
-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에서 제시된 PTSD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2. 그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함
3. 외상성사건(들)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4. 외상성 사건(들)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

[참고] symptoms of PTSD in DSM-V

- Intrusive Symptoms
- Avoidance symptoms
- Negative changes in cognitions and mood
- arousal symptoms
- dissociation

• 트라우마의 유형(Teal's typing system, 1994)

- 트라우마 사건의 고의성과 지속성 등 트라우마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심리적 후유증 및 회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사고, 자연 재해, 단회성으로 발생한 외상 사건은 단순 트라우마(simple Trauma) 혹은 Type I 트라우마로 분류된다. 반면, 아동 학대, 가정폭력, 포로 경험, 난민 경험 등 고의성을 지니고 반복적 및 장기적으로 행한 폭력 혹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대인간 폭력은 복합 트라우마(complex trauma), 혹은 type II 트라우마로 구분된다.
- 복합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후유증은 단순 트라우마와 양상이 다소 다르다. 복합 트라우마는 심리적 피해는 인지, 정서, 행동, 의미 체계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 조절 기능의 손상,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손상, 신체화 증상,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의미체계의 변화 등 자아 기능의 손상과 지속적인 성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복합 트라우마 생존자의 심리적 회복 및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의 증상

- 정서조절의 어려움
- 주의와 의식의 변화
- 자기 지각의 변화
- 가해자 지각의 변화
- 대인관계 어려움
- 신체화/건강 문제
- 의미 체계의 변화

3. **결연: 선감학원 생존자의 심리적 회복에 대한 접근**

-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10대의 연령대에 외상에 노출되었다는 점, 대부분 지지자원이 부족했다는 점, 외부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공간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며 수년간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상당수의 생존자들이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아동기 및 학령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애착 및 학업 기능 등 건강한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수행이 어려웠을 수 있어 보이며, 성인기에 도래하여 사회 적응 및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함께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사회적 정의 회복: 복합 외상 생존자는 진실이 인정받아야지만 회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전문화된 평가와 트라우마 초점 심리치료의 필요성
: 트라우마 초점 인지행동치료(TF-CBT),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법(EMDR), 지속 노출 치료(PE), 내러티브 노출치료(NET)
: 선감 학원 생존자들은 PTSD 증상 외에도 우울 및 불안 문제, 약물 남용, 기능 장애 등 공병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복합 외상의 경우 외상 기억에의 접근 및 심리 치료는 안정화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에 대한 debriefing은 재외상화(re-traumatization)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생존자에 대한 전문화된 심리 평가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토대로 생존자의 개별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한 트라우마 초점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4. **References**

Rothschild, B. (2000). The body remembers: The psychophysiology of trauma and trauma

treatment, New York:W. W. Norton & Company. (번역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

Laurence Miller (2008). 김태경 역(2015). 범죄피해자 상담, 학지사

권정혜 외 (2008). 재난과 외상의 심리적 응급처치, 학지사

안현의, 주혜선 (200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 869-843.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문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병사들의 정신을 망가뜨린 것은 전투의 외상이 아니라
베트남전의 도덕적 양면성 그리고 미국정부와 군의 기만이었다.”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 중에서)

1. 최근 들어 과거 국가가 주도했던 부랑인 정책의 폐해와 그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사회화되어지고 있음. 일제시기 건설돼 1982년까지 운영된 선감학원, 1960년대 설치, 운영된 대한청소년개척단, 내무부훈령 410조에 근거해 운영된 부산 최대 부랑인 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임.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랑인 정책이 2010년 이래 부상해 현재에 주목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하나는 부랑인정책의 잔혹함임.

위 부랑인시설은 경찰 및 관계자들의 자의적인 부랑인 일제단속, 속칭 ‘후리가리’(경찰의 일제 단속 등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오는 속어)를 통해 무고한 이들을 자의적으로 강제구금, 수용한 데 이어 강제노역에 동원해왔음. 또한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피수용자들은 극도의 배고픔과 (성)폭력, 학대, 죽음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생활을 해오면서,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함. 국가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된 부랑인 정책의 잔혹함은 많은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여기’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 두 번째는 과거청산의 실패에 따른 것임.

산업화의 성취에 따른 경제적 진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랑인 정책과 시설 운영에 따른 청산작업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음. 이는 과거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협한 인식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함.

즉 기존의 과거사는 민주화운동 혹은 양민이나 노동자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는 해방이후 우리 역사와 기억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두축으로 대문자화되어 구성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부랑인’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다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현재도 그러함. 이는 권력이 생산한 ‘부랑’(담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 변방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의 시선을 명징하게 나타내는 것이기도 함.

이에 따라 ‘부랑인’ 정책의 피해(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가족의 해체, 경제적 빈곤과 고통, 사회적 고립, 신체적 질병, 트라우마를 경험해왔음. 또한 부랑인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아동)이 ‘부랑인화’되는 결과를 낳음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인 사회적 고통임.

- 마지막으로 피해(생존자)들의 인권, 권리 의식 진전과 이에 대한 사회적 호응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음.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중선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형제복지원 문제는 과거에서 ‘지금-여기’로 호출되었으며, 이런 요청위에서 피해생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 대책위가 결성돼 형제복지원 문제의 완전해결을 촉구해왔음.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2012년 이래 선감학원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이래 피해자 대책위를 만들어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 등을 추구하고 있음. 대한청소년개척단원들 역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각 사건의 피해생존자들이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과거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청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권력이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해왔으며, 추가 피해에 대한 공포, ‘부랑인’ 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은 이들의 목소리가 집단화되거나 사회화되는 장벽으로 존재했음.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식의 신장은 이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확산, 전파되는 것을 가능하고 일정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함.

2. 이러한 특성들은 선감학원 문제를 비롯한 부랑인 정책에 대한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환기함. 즉 국가차원에서 선감학원 및 해방이후 운영된 부랑인의 강제격리 및 수용 시설에 대한 면밀한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들의 시설 이후 삶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님.

- 우선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쓰는 기획임.

기존의 역사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에 갇힌 이들에 대한 역사는 배제되거나 소외돼 역사로 구성되지 못했음. 공공기억 역시 부재했음.

하지만 해방 이래 국가주도로 부랑인 선도라는 목적 하에 전국에 시설들이 설립, 운영되면서 대규모의 수용과 감금이 계속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랑인정책 및 수용시설에 대한 진상규명의 과정 및 이후과정은 변방으로 내몰리고, 배제된 이들의 삶에 기반해 현대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기획이 될 것임. 즉 진상규명의 과정을 통해 밝혀진 진실과 피해생존자들의 기억을 공공 담론화해 새롭게 역사를 써야하며, 이 과정에서 권력의 통치성을 통찰하고 현재의 시설 정책을 재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공권력의 권한 및 국가폭력에 대한 재고,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전파된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등 역시 필요함.

• 두 번째 공동체적 가치를 성찰하고 새로운 공통감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임.

피해생존자들에게 선감학원의 경험은 매우 트라우마적 경험임. 때문에 피해생존자들의 적지 않은 수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함.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무지와 부인으로 일관해왔으며,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음. 즉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입증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은 있었지만 국가가 의도하거나 국가범죄는 아니라거나, 그런 행위가 체계적이고 일상적이며 반복된 행위는 아니었다는 해석적 부인과 공공질서 유지와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함축적 부인을 통한 역사적 부인으로 일관해왔음.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치유 불가능한 트라우마적 경험이 우리사회의 정체성을 변화, 발전시키는 ‘문화적 트라우마(culture trauma)’로는 형성되지 못해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부랑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비록 과거사라 할지라도 사회적 정의가 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감각을 새롭게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임. 또한 사회에 만연한 부인(denial)의 문화를 시인(acknowledgement)의 문화로 전환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임. 이러한 전 과정은 새롭게 공동체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될 것임.

• 세 번째 사회적 치유의 의미임.

많은 피해생존자들이 만성적인 죄책감과 수치심, 삶에 대한 무력감을 내면화한 채 살아왔음.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해결이 더디다 보니 이들의 트라우마(사회적 고통)이 더욱 심화, 증폭된다는 점으로

이는,

- 국가의 반성이 부재하고 사건 은폐가 지속되며
- 부랑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두둔과 망각,
-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원과 냉대가 만연하기 때문이며
- 동시에 피해자들의 낮은 학력, 빈곤한 사회적 관계(지지망),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치유임. 사회적 치유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음.

우선 신뢰를 통한 피해생존자의 안정감 회복으로,

- 사회구성원이 선감학원 문제를 생애적 의미의 트라우마로 인지하고 수용하려는 노력
- 사회적 치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두 번째 단계는 기억과 애도로,

- 기억과 그 고통을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의례화
- 진실규명, 책임귀속, 피해보상

마지막 단계는 사회관계의 복원임.

- 피해 집단구성원의 사회관계회복
-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시스템개선

- 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 조치와 함께 선감학원 내에서의 경험은 물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면밀한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피해생존자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함.

4. 사회적 치유의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자들의 사과 역시 간과될 수 없음. 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동료 피해생존자들 간의 시인과 사과가 필수적임.

같은 원생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물리적 위계에 따른 (성)폭력과 구타가 매우 빈번하였다는 다수의 증언이 제출되었음.

“사장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무서웠지. 선생보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한테 맞는 것보다 사장한테 맞는 게 더 무서웠어.”
 (이대준. 경기도, 2018: 361)

“개네들은 선생들 풀마니들이예요. (중략) 나이가 많으니까 관리를 시킨 거죠. 그리고는 심심하면 특하면 앞드려뻥쳐, 원산폭력, 대가리 박기, 한강철교 시키면서. 애들이 어리니까 힘들 거 아니예요. 힘들어서 지쳐있으면 또 앞드려뻥쳐 때리는 거예요. 각목으로.”
 (이O림. 경기도, 2018: 368~369)

“나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강간 당한 거예요. 첫날부터. (중략)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뭔지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남자들 20살씩 먹은 애들이 다 반장이고 이런 간부들이잖아. 그러면 성기라고 하는 것도 무기가 되는 거죠. (중략) 성폭행을 지금 우리는 그냥 성폭행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은어는 그걸 ‘후장’이라고 그래. 후장. 후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후장 풀마니’. 근데 그 종달새집, 앵무새집 이런 데가 한 100명씩 자던 거기에는 뭐 사감도 있고 방장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이 애들을 ‘후장’을 따는지 안 따는지 그런 모르겠어. (중략) 간부단에 자꾸 끌려 다니는 거야.”
(임용남. 경기도, 2018: 398)

그동안 피해생존자 내부에서의 가해와 피해의 문제는 공적으로 논의되지 못함. 이는 선감학원의 국가폭력을 보다 명징하게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생 간 폭력 역시 국가폭력 등에 따라 발생한 2차적 피해라는 점, 같은 피해자 집단 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이중 정체성은 개인의 트라우마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피해 집단 내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두 번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과 역시 이루어져야함.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인 선감학원의 실상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방관해왔음.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들의 약점을 악용해,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왔다는 사실임. 이와 관련해서는 일치된 다수의 증언이 존재함.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 거야. 거기서도 막 때려요. 만약 말 안 들으면 다시 보낸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잡아주면 밀가루 한 포대씩 받았어요. 그 때 당시 밀가루 한포대가 얼마나 비쌌는데.”
(이대준. 경기도, 2018: 354)

“건너가자마자 거기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중략) 머슴도 아니고 뭐 거의 노예. 머슴이라면 뭐라도 샅이라도 받았어요. 근데 노예나 다름없죠. 거기 잡혀갖고서는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숨겨줄테니까 다른 데 안가고 자기네 집에 있는 걸로 해갖고서는 약속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빠삭해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물에 들어오는 배타고 저기 선감학원 선생들이 우리들 잡으러 여기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이러니까 숨겨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도로 거기로 보내겠다. 그러면 거기 간다는 자체가 우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한일영. 경기도, 2018: 483~484)

5.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이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즉 피해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피해자라는 수동화 된 대상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과정 절차를 밟으며, 이들을 ‘민원인’이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 권리의 담지자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이 과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및 회복,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또 이러한 과정은 과거청산을 넘어, 새로운 시민의 ‘권리’를 발명하고 안착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상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발표 및 토론회**

발 행 일 2018년 6월

발 행 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15층

전화 : 02) 2125-9642

팩스 : 02) 2125-0929 (아동청소년인권과)

<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리드릭 (02-2269-1919)

I S B N 978-89-6114-627-2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